

2025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drights.kidp.or.kr



CONTENTS

2025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디자인권리보호 제도 소개

디자인법률자문단	8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10
디자인공지증명	12
디자인표준계약서	14
디자인너경력관리	15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지식재산권 관련	17
계약 및 디자인 용역비 관련	75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97
노무 및 회계 관련	105
기타 및 특수사례 관련	119



사례 찾아보기

디자인 분쟁조정 절차



디자인 권리보호

디자인표준계약서

모든 디자인 분야에 적용되는
통합 표준계약서

디자인대가기준

디자이너 노임단가
/표준품셈

디자이너경력관리

디자이너 경력의
체계적 관리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권 등록 출원 전
디자인침해 사전 예방

디자인권 등록(특허청)

공지증명 등록 후 12개월 이내,
디자인출원 시 심사 결과에 따름



디자인권리보호
제도 소개

kidp

>>>

디자인권리보호 제도 소개

1. 디자인법률자문단
2.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3. 디자인공지증명
4. 디자인표준계약서
5. 디자이너경력관리





01

https://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법률자문단은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전국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피해 신청인과 법률자문위원 간 1:1 맞춤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며, 미해결 분쟁 건은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디자인전문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디자이너 등 디자인업계 관련자
지원내용	피해 신청인과 법률자문위원과의 1:1 맞춤상담 서비스
신청방법	<p>해당 권역별 신청(상세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참고)</p> <p>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수도권) - https://www.designsos.co.kr</p> <p>광주디자인진흥원(호남·제주권) - https://www.gdc.or.kr</p> <p>부산디자인진흥원(부산·경남권) - https://www.dcb.or.kr</p> <p>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대구·경북권) - https://www.dgdp.or.kr</p> <p>대전디자인진흥원(충청권) - https://www.didp.or.kr</p> <p>강원디자인진흥원(강원권) - https://www.gidp.kr</p> <p>온라인 통합 신청</p> <p>웹사이트(drights.kidp.or.kr) 내 디자인법률자문서비스 신청서 접수</p>
문의처	<p>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p> <p>drights.kidp.or.kr 031-780-2232 drights@kidp.or.kr</p>



- 1. 피해사례 접수**
 - 디자인 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디자이너 → 권역별 담당기관
 - 법률상담 신청(신청방법: 웹사이트(drights.kidp.or.kr), 전화, 우편)
- 2. 피해 유형별 DB화 및 상담연결**
 - 접수내용 파악 후 피해 유형별 분류 DB
 - 담당 자문위원 지정 및 신청인과의 1:1 상담 연결
- 3. 신청서 검토 및 법률상담 진행 (자문위원 진행)**
 - 신청서 검토
 - 상담 신청인과의 1:1 상담 진행(전화 상담/필요시 방문 상담 가능)
- 4. 법률상담카드 작성 및 전달 (자문위원 진행)**
 - 담당 자문위원 1:1 상담 및 자문 종료 후 권역별 담당기관에 법률상담카드 제출
- 5. 자문의견 전달**
 - 담당 자문위원으로부터 받은 법률상담카드를 신청인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여 법률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재확인



02

<https://drights.kidp.or.kr/sub/conciliation.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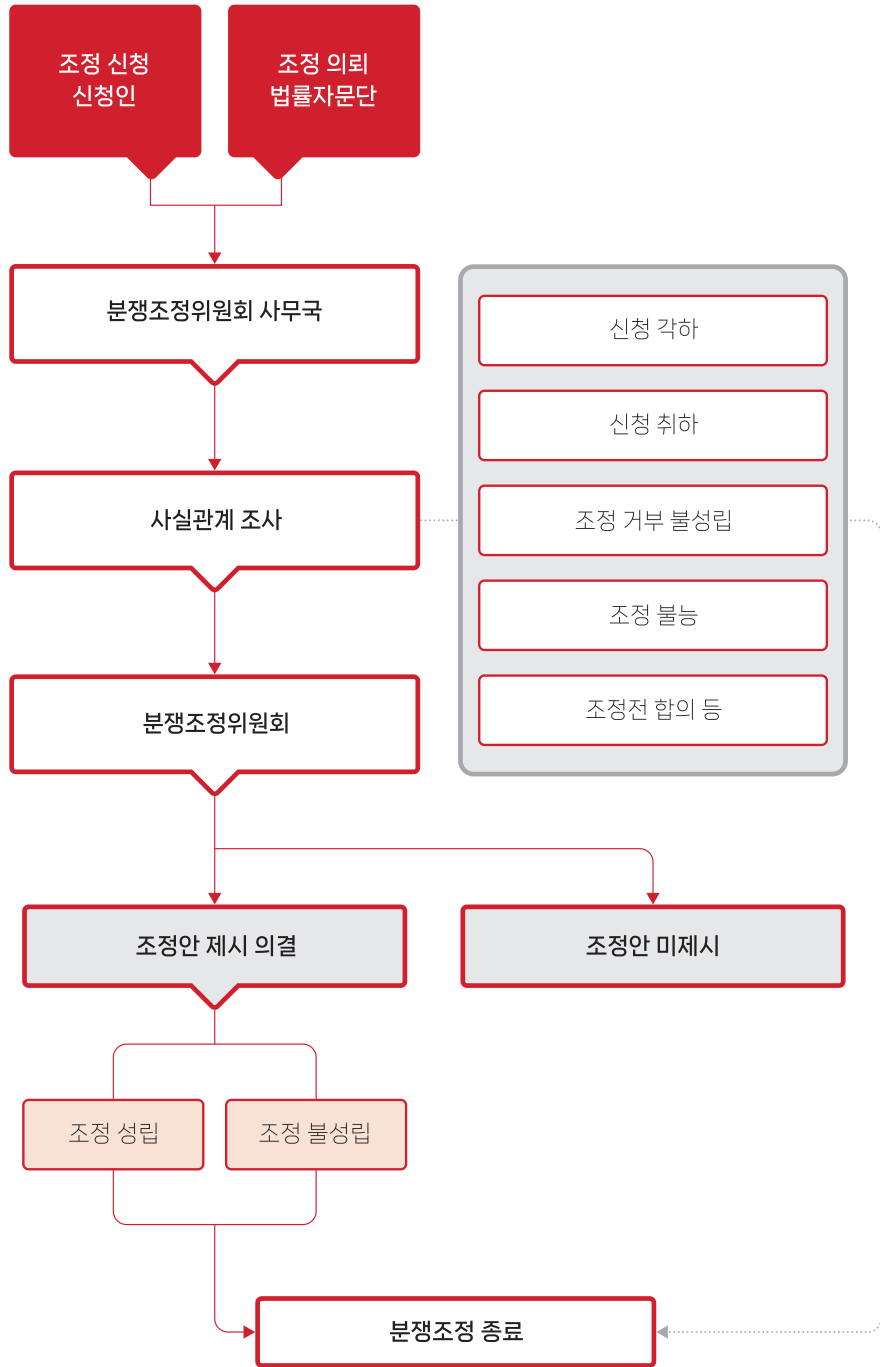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디자인 관련 소송 제도의 대안으로서,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안을 제시해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이끄는 조정기구입니다. 분쟁 당사자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법적 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지원대상	디자인전문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디자이너 등 디자인 관련 분쟁 중에 있는 자
지원내용	<p>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p> <p>* 단, 권리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 확인 등 심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외</p>
신청방법	<p>웹사이트(drights.kidp.or.kr) 내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p> <p>*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 가능</p> <p>디자인기업 피해지원센터 및 디자인법률자문단</p> <p>한국디자인진흥원과 디자인산업연합회가 공동 운영하는 디자인기업 피해지원센터 및 권역별 디자인법률자문단 상담 과정에서도 신청 가능</p> <p>신청사건의 접수 및 통보</p> <p>디자인분쟁조정 신청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이 통보되고 피신청인에게는 답변서 양식을 포함하여 조정 안내서류 등이 함께 송부됨</p>
문의처	<p>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p> <p>drights.kidp.or.kr 031-780-2232 drights@kidp.or.kr</p>

운영절차





03

https://drights.kidp.or.kr/sub/standard_contract.asp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공지증명은 디자인권 등록 이전에 권리화 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디자인 창작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타인의 디자인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지증명의 장점

- ① 디자인출원 등록 전 창작 사실(창작자, 시기)을 대외에 공지하여, 개발 과정 중 창작된 디자인 안이 외부에 공표, 공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모방(Dead Copy)을 방지
 - ② 특허 등록을 거치지 않은 디자인 안에 대해서도 경쟁업체 등의 모방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에 대응 가능
- * 공지증명(공개)된 디자인은 특허청 디자인권·특허 심사 시 창작 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 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 예방
- ③ 디자인분쟁시 디자인 공지증명 효과 (중간결과물 공지증명 활용 효과)

디자인 창작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공지증명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등록과 디자인공지증명의 차이점

구분	디자인 등록	디자인공지증명
목적	·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 발생	· 공지 사실 증명
처리기간	· 출원 후 6개월 내외	· 짧음(1~3일)
권리 범위	·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디자인보호법 제 92조)	· 독점·배타적 권리 없음 · 등록 후 12개월 이내 디자인출원한 경우 디자인권(재산권) 확보 가능
신청 절차	· 출원인이 출원수수료 납부와 함께 디자인 등록 출원서 제출 ·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 후 설정 등록료 납부를 통해 디자인권 발생	·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도면과 신청서만을 제출 · 실체 심사 과정이 없으므로 절차 간단
비용	· 출원비용: 94,000원 · 설정등록료(1~3년분): 75,000원 · 연차등록료: 4년 후부터 3년 단위로 누진제	· 20,000원/건 대학생 이하는 무료 (변리사 대행 불필요, 직접 등록 가능)
보호 기간	· 존속 기간 20년	·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창작일로부터 3년간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drights.kidp.or.kr 031-780-2232 drights@kidp.or.kr	

STEP
01



신청서 작성

STEP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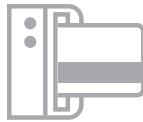
첨부서류 업로드

STEP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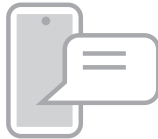
등록기관의
서류 검토

STEP
04



수수료 납부

STEP
05



결과 통보 및
증명서 출력

STEP
06



등록 자료
특허청 이관



04

https://drights.kidp.or.kr/sub/standard_contract.asp



디자인표준계약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용역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디자인 업계 내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늘리고 공정한 디자인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배포 중입니다.

* 법적 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 2(표준 계약서의 제정·보급)



01

평등한 계약 관계

'갑'과 '을'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평등한 계약 관계 명시



02

피해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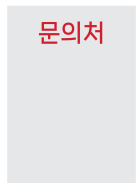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용역 단계별 귀속 주체를 명시하여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



03

통합계약서

모든 디자인 분야에 활용 가능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drights.kidp.or.kr | 031-780-2232 | drights@kidp.or.kr



05

<https://designcareer.kodfa.org/>



디자이너경력관리

디자이너경력관리는 디자이너 개개인 자신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력 확인 제도입니다. 근무했던 직장의 폐업·합병 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거나, 번거롭게 여러 근무지에 요청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하나의 통합된 경력 관리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경력 확인서를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경력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증빙 필요시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에서 경력 확인서를 상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디자이너경력관리 신청 절차



•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이용 수수료 체계



문의처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designcareer.kodfa.org | 02-3445-5198 | dsncareer@hanmail.net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kidp

>>>

지식재산권 관련



01

지역
경북

① 지식재산권

사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구두고지, 형사고소 등을 하였지만 상대방이 등록무효이의신청 및 심판을 제기하게 된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

○ 내용(요약)

등록무효 이의신청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B업체에 위탁생산을 의뢰한 적이 있으며, 의뢰한 제품의 디자인은 디자인권이 보호받는 제품임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더 이상 실시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으나 B업체가 실시를 하여 형사고소를 함. 한편 B업체는 A업체의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무효이의신청을 신청하여 패소한 후 재차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A업체는 이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

○ 자문의견

A업체의 등록디자인은 가로세로가 교차하는 평범한 직조형태의 디자인으로 출원전 공지된 유사한 디자인이 있을 수 있고 아울러 평면디자인으로서 모양이 없는 구성이어서 무효될 가능성도 높다할 디자인으로 판단됨.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항에 따르면 침해죄에 대한 공소제기는 반의사 불벌죄로 되어 있어 등록권리자가 소를 취하하면 무효심판청구인은 처벌을 면할 수 있음.

A업체에게 B업체와 연락하여 협의할 것으로 제안하였고 A업체는 협의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이후 자문 내용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권이 무효가 될 수 있는 하자가 있음을 인지한 후 최대한 B업체와 합의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그후 원만히 합의했다고 연락하여 옴에 따라 상담을 종료하였음.

디자인 용역계약서 검토와 개발된 상표의 출원 가능성

○ 내용(요약)

자사 상표권 검토요청

○ 해당분야

계약

○ 사례경과

1. 디자인 계약서 검토

A업체의 디자인 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가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 요청.

A업체가 현재 디자인 프로젝트 진행에 사용하고 있는 표준 디자인 계약서에 대해 법률적 타당성, 위험요소, 보완 필요사항을 검토 요청.

특히 계약상 조항에 대해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는지 확인 요청.

2.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 사전 검토

A업체에서 계획 중인 카페 브랜드 000에 관해서 상표 등록 가능성 및 유사 상표 여부 사전 검토 요청.

네이밍만 확정, 디자인은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

검토 요청 범위: 해당 상호의 상표 등록 가능성, 유사·동일 상표 존재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

○ 자문의견

디자인용역계약서를 작성할 시 계약의 일반적인 사항과 해당 계약에만 특수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계약사항으로 계약범위, 계약기간(지체상금 포함 등), 대금지급조건, 산출물의 귀속여부, 산출물의 납품 및 검수, 비밀유지사항, 계약해지사유 및 분쟁발생시 해결방법 등이 있으며, 특수한 사항은 위 디자인용역계약에 따른 공급자와 수요자간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계약사항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건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판단되나 제3조(보수)의 계약내용 중 제작비, 출장여비, 인쇄비는 공급자(갑)가 수요자(을)와 협의없이 별도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계약금액의 증액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작비, 출장여비, 인쇄비도 수요자(을)와 협의하여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또한 카페 브랜드 명칭으로 000은 카페업종에 사용 시 식별력이 있어 보이며, 카페업의 기술적표장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상표 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에서 검색한 결과 현재까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출원되거나 등록된 사항으로 검색되지 않아 위 브랜드명칭을 카페업종(제43류)에 출원하는 경우 등록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할 것임. 다만, 위 키프리스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정보제공되는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선출원 존재여부는 출원후 심사시 확인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림.

03

지역
대구

① 지식재산권

사사가 개발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출원 및 등록 가능 여부

○ 내용(요약)

브랜드 출원 및 등록 여부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탁월한 효능의 건강기능식품들을 만들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B2B 건강기능식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도매·소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번에 건강기능식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B2C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자 신규 브랜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상표 출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브랜드 네임 등록 여부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

○ 자문의견

상표 위 표장 "OOOO"의 관련 제품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비타민, 미네랄 등"과 그 판매업을 포함하는 "제5류, 29류, 35류"에 대한 상표등록가능성 검토.

출원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OOOO"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검색되지 않아, 대상상표는 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검색상표들 중에서 "OOOO"로 발음될 수 있는 "□□□□"와, "△△△△"가 대상상표와 발음유사도가 높으나,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칭호, 관념, 외관의 대상상표는 이들과 비유사하다고 판단됨.

대상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가 검색되지 않으므로, 상표 출원 시 대상상표는 등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04

지역
대구

자사가 개발한 펜스 제품 디자인 등록 가능 여부

○ 내용(요약)

자사 제품 디자인 등록 가능성 여부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에서 개발한 펜스 제품에 대한 디자인 등록가능성에 대한 자문 요청

○ 자문의견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상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함.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에 대해 부여된 독점적 산업재산권으로,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발생하며 권리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임.

본 제품은 공장, 도로, 공원, 아파트, 학교 등에 설치되는 펜스이므로 독립거래가 가능한 유체동산으로 공업적 생산에 의하여 동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품이므로 물품성과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함.

대상제품의 경우, 펜스의 기본적인 직사각 형태의 틀안에서 기둥 측면부와 하단의 고정부분에 디자인의 특징이 발현되어 전체적으로도 기존 제품에 비하여 디자인적인 차별성이 있고, 수요자들에게 하여금 특유의 심미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므로, 신규성과 창작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본 제품들은 국기, 국장 등과 유사하지 않고,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업무와 혼동가능성이 없고, 물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어서 디자인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므로 본 제품은 디자인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선출원주의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① 지식재산권

KEYWORD 디자인등록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LED 제품 디자인등록의 가능 여부

○ 내용(요약)

자사 제품 디자인 등록 가능성 여부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가로등 상부 부분을 개발하고 있음. 이에 출원 시 디자인 등록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 자문의견

본 제품은 가로등 상부 부분으로 독립거래가 가능한 유체동산으로 공업적 생산에 의하여 동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품이므로 물품성과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함.

본 제품의 경우, 원반형의 상부에 띠모양의 LED 모듈이 장착되어 특유의 심미감을 일으키고, 원반형 상부를 받치고 기둥과 연결되는 하부 구조는 폭이 유려하게 감소하는 형상이어서 전체적으로도 기존 제품에 비하여 디자인적인 차별성이 있고, 수요자들에게 하여금 특유의 심미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므로, 신규성과 창작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본 제품은 국기, 국장 등과 유사하지 않고,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업무와 혼동가능성이 없고, 물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어서 디자인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므로 본 제품은 디자인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선출원주의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반려동물 구강특화 수제간식으로 개발된 자사 브랜드의 상표출원 가능 여부

○ 내용(요약)

상표출원 가능여부 검토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반려동물 구강관리용품과 구강특화 수제간식 등을 만들고 있는 사업체로 펫용 구강 관리용품 및 식품에 대한 브랜딩을 위하여 5개 상표명 등록 가능성 확인을 위해 법률 자문을 통해 등록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상표권 확보 후 BI를 생성하여 사업에 적용하고자 함.

○ 자문의견

먼저 'OO'는 이닦을 때 나는 소리로 상표의 부등록사유인 상품의 성질표시 즉 상품의 용도가 이를 닦는데 사용하는 상품에 해당될 수 있으나 특허청의 지금까지 상표심사의 관행상 성질표시로 보지 아니하는 심사사례가 있어 일단 'OO+a' 또는 'OO+aa'의 경우 타인의 선출원이나 선등록이 없는 경우 등록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보여짐.

다만, 반려동물 구강관리용품 및 구강특화수제간식 등의 상품류에 'OO+aa' 등으로 다수의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어 'OO'만을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될 수 있어 등록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OOOO'의 경우 상품류구분 05류(수의과용 식이보충제, 영양보충제 등)에 선등록상표가 존재하고있어 출원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할 것임.

나머지 OO□□, OO△, OO◇ 등의 상표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나 유사한 명칭 및 유사한 발음이 다소 발견되고 있음. 예컨대 OO◇의 경우 심사관이 심사시 다른 상표권과의 호칭유사로 거절할 수도 있어 보임.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경우 그 상품이 인기가 있어도 타인에게 사용권 등을 설정해 줄 수 없으며 간혹 타인이 먼저 상표권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 오히려 상표권침해 소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7

지역
부산

무선통신기기 브랜드 개발 디자인 상표출원 가능 여부

○ 내용(요약)

상표출원 검토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자사 로고에 대하여 무선통신기기 등을 포함하는 제9류와 무선통신기기 설치업 등을 포함하는 제37류에 대한 상표등록가능성에 대한 가능여부를 검토 요청함.

○ 자문의견

대상상표는 기술적 표장으로 출원시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별도의 식별력 있는 구성을 추가하면 등록을 도모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기술적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도형이나 캐릭터 등의 결합이 해당됨.

이 경우에는 등록에 이르더라도 상표의 효력은 도형 등에서 발생하고 문자부분인 "OOOO" 부분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어 독점권을 인정받기 어려움.

다만, 문자부분에 대한 상표의 독점력을 향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음.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출원여부에 대한 결정하실 것을 제안 드림.

08

지역
경북(상주)

자사가 개발한 양봉원 브랜드 출원 가능 여부

○ 내용(요약)

상표출원 가능여부 검토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경북 상주에 위치한 양봉원으로, 꿀, 프로폴리스 등 양봉제품과 그 가공업에 대해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 출원시 등록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

○ 자문의견

상표 위 표장 "로고+OOOO"의 관련 제품 "꿀, 프로폴리스 등"과 그 판매업을 포함하는 "제30류, 35류" 및 그 가공업을 포함하는 제40류에 대한 상표등록가능성 검토.

상표법 제33조 : 상표 자체의 거절이유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재료,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도 상표는 등록을 불허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상당히 낮게 인정됨.

대상상표는 꿀 등과 그 판매업 및 그 가공업 등의 지정상품에 대한 품질이나 효과 등의 성질을 직감시키는 상표가 아니어서 자체 거절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하에서는 제3자의 동일 또는 유사한 선등록/선출원 상표가 있는지를 검토함.

대상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가 검색되지 않으므로, 상표 출원 시 대상상표는 등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09

지역
대구

의류 브랜드 출원가능성 여부

○ 내용(요약)

상표출원 검토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의류 브랜드로 자사의 약자에 해당할 수 있는 OO과 OO에 플러스를 의미하는 약자인 △△가 결합된 OO△△를 고려하고 있음. 이에 두 브랜드를 상표출원할 경우, 등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 후 출원까지 진행 요청.

○ 자문의견

OO 및 OO△△의 의류를 포함하는 25류와 그 판매업에 해당하는 35류"에 대한 상표등록가능성 검토 필요.

대상상표는 의류 등과 그 판매업과 인터넷쇼핑물업에 대한 품질이나 효과 등의 성질을 직감시키는 상표가 아니어서 자체 거절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하에서는 제3자의 동일 또는 유사한 선등록/선출원 상표가 있는지를 검토함.

대상상표 중 OO은 유사상표가 검색되어 출원시 등록가능성이 낮은 반면, OO△△는 유사상표가 검색되지 않아, 등록가능성이 높음.

대상상표 OO△△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가 검색되지 않으므로, 상표 출원 시 대상상표는 등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선출원주의를 고려할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원할 것을 제안 드림.

10

지역
경북(의성)

자사 낚시용 회전의자 디자인권 출원 가능 여부

○ 내용(요약)

디자인출원 검토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낚시용 회전의자를 대량생산하여 판매하려고 함. 이에 제품을 디자인 출원할 경우에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

○ 자문의견

본 제품은 낚시용 회전의자로 독립거래가 가능한 유체동산으로 공업적 생산에 의하여 동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품이므로 물품성과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함.

대상제품의 경우, 쿠션을 제공하는 좌판과 알루미늄 판재가 결합된 상부 구조와 알루미늄 판재가 결합된 하부 구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특히, 대상제품은 하부 구조에 있어서 다리길이 조절과 다리의 접철 등을 위한 구성요소의 조합에 의하여 형상면에서는 기존의 제품과 디자인적인 차별성을 가진다고 판단됨.

즉, 대상제품은 기존의 제품에 비하여 디자인적인 차별성이 있고, 수요자들에게 하여금 특유의 심미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므로, 신규성과 창작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본 제품들은 국기, 국장 등과 유사하지 않고,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업무와 혼동가능성이 없고, 물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어서 디자인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 제품은 디자인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선출원주의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11

지역
경북(성주)

자사 수납식 관람석용 락킹 고리 디자인 출원 가능 여부

○ 내용(요약)

디자인출원 검토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수납식 관람석용 락킹 고리를 디자인하여 개발하고 있음. 이에 제품을 디자인 출원할 경우에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

○ 자문의견

본 제품은 수납식 관람석용 락킹고리로 독립거래가 가능한 유체동산으로 공업적 생산에 의하여 동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품이므로 물품성과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함.

대상제품의 경우, 얇은 두께를 갖는 몸체에 락킹 부분과 스토퍼를 등이 추가되어 특유의 디자인적 요소를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제품과 디자인적인 차별성을 가진다고 판단됨.

즉, 대상제품은 기존의 제품에 비하여 디자인적인 차별성이 있고, 수요자들에게 하여금 특유의 심미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므로, 신규성과 창작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본 제품들은 국기, 국장 등과 유사하지 않고,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업무와 혼동가능성이 없고, 물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어서 디자인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 제품은 디자인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선출원주의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12

지역
대구

하계휴가용품 판매 브랜드 로고 상표출원 가능 여부

○ 내용(요약)

상표출원 검토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수영복, 물놀이용품 등의 판매업 및 인터넷쇼핑몰업에 대해 브랜드를 론칭하고자 하여, 로고를 개발하였음 이에 개발한 로고를 특정 지정상품에 대해 출원하고자 하여, 등록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함.

○ 자문의견

먼저 출원/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불허함.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표 요부의 칭호, 외관 관념을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함.

분리관찰될 수 있는 경우, 주요 부분 중 하나가 동일/유사하면 유사상표로 판단 가능.

다만, 상표법 제33조가 적용될 정도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재료 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본 조가 적용되는 상표의 주요 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음.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대상상표의 발음 "OOOO"의 "OO"와 "OO 또는 △△"를 단독으로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검색되나, 모두를 포함하는 상표는 검색되지 않음.

대상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가 검색되지 않으므로, 상표 출원 시 대상상표는 등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13

지역
강원

공모전 수상작 캐릭터의 저작권과 2차 가공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 내용(요약)

공모전 수상작 캐릭터의 저작권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조합법인으로 브랜드 홍보 강화를 위해 캐릭터 공모전을 기획함. 공모전 진행 시 저작권 및 계약 관련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림.

1. 공모전 단계별 필수 점검 사항
2. 공모요강 내 안내 및 유의사항 문구 검토
3. 수상자와 저작권 양도계약서 작성 방법 및 권리 귀속 범위

○ 자문의견

1. 공고요강 내 저작권 관련 조항 개선

응모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응모자에게 귀속되나, 수상작의 저작권은 시상금 지급을 전제로 주최자에게 양도된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권고드림.

수상작은 홍보용으로 2차 가공 및 활용 가능하며, 추가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표절·모방·초상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음.

2. 저작권 양도계약서 주요 조항 정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향후 변경 시 서면합의로만 효력이 발생됨.

3. 캐릭터 보호 및 등록 전략

캐릭터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 시 공시효과·추정력·대항력 확보가 가능함.

저작권 등록 → 디자인 출원(도안·스티커 등 실물형태) → 상표 출원(캐릭터+제호 조합) 순서로 다층적 보호 추진을 제안드림. 저작권 등록은 약 1주, 상표권은 약 10~12개월, 디자인권은 약 2~12개월 소요될 수 있음.

웹 플랫폼 특허출원 가능 여부

○ 내용(요약)

디지털 플랫폼 특허 등록

○ 해당분야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A업체는 미술작품의 디지털 이미지와 작가 정보를 아카이브 하는 웹 플랫폼을 개발 운영 중임. 작가가 고화질 작품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작품 정보가 자동으로 리스트화되어 관리·공유되는 구조이며, 기존의 수동 문서 관리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시스템임.

이 플랫폼의 주요 기능이 특허 등록 가능한 발명인지 자문을 요청.

○ 자문의견

본 플랫폼은 작품 이미지와 세부 정보를 통합·자동 문서화·공유하는 기술로서, 기본 구조는 특허권 보호대상에 해당됨.

선행 문헌(KR10-1869418, KR10-2002473 등) 비교 결과, 기존 기술은 '사용자 맞춤형 전시품 이미지 제공 시스템'으로서 작가 주도형 플랫폼과 데이터 관리형 구조는 차별성이 인정됨.

다만,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AI 기반 중복 이미지 판별 기능, 작품 판매·전시 연계 기능 등의 기술적 구성을 구체화하면 진보성 확보가 가능해 보임.

특허출원 시 일반심사는 약 1년 8개월~2년, 우선심사 신청 시 약 5~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제품디자인 유사성 분쟁 예방 관련 자문 요청

○ 내용(요약)

제품 출시 전 선행디자인 검토 및 분쟁 예방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티타늄 소재를 활용한 허클리너를 기획하며, 시장 내 유사 제품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디자인 유사성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우려됨.

제품의 형태는 기존 허클리너와 큰 차별이 없는 구조로, 타사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분쟁 방지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림.

○ 자문의견

타사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려면, 해당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함.

등록된 디자인이 있을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침해 우려 시 회피 디자인 설계를 권장함.

향후 출시 전, 등록디자인의 독점 범위 분석 및 대비 절차를 거치면 분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음.

16

지역
강원

지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개발 및 판매 가능 여부

○ 내용(요약)

지자체 보유캐릭터의 상품화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와 위탁계약을 통해 지역 브랜드 빵의 유통판매원으로 지정된 기업임. 당사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에 사용된 캐릭터는 지역 관광과에서 개발한 캐릭터로, 농업기술센터가 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임.

A업체가 유통판매원 자격으로 이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머그컵, 키링 등) 개발 및 판매 가능 여부, 그리고 해당 행위를 위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자문 요청.

○ 자문의견

1. 디자인권의 효력 범위

해당 지자체의 디자인권은 '라벨'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빵 자체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음. 신청기업이 사용하는 제품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직접적인 침해 우려는 낮음.

2. 보호 강화 방안

신청기업의 빵 디자인을 식품류 디자인권으로 별도 등록하고, 지자체가 해당 디자인에 대해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이때, 실시권 설정은 계약서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

3. 굿즈 개발 시 주의사항

굿즈는 빵과 다른 물품이므로, 물품별로 별도 디자인권 등록이 필요함. 캐릭터를 사용한 굿즈 판매를 원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실시권을 받아야 함.

17

지역
강원

제품 용기 리디자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가능성과 방법이 궁금함

○ 내용(요약)

기초 출원을 통한 선점 보호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타사의 기존 OOOO 제품의 용기 형태를 모티브로 한 아이스크림 전용 용기 디자인을 구상 중임.

1안은 기존 플라스틱 재질에 개봉선 기능을 추가한 구조 개선안, 2안은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리디자인안으로, 두 안 모두 사용 편의성과 기능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이디어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가능 여부와 타사의 기존 OOOO 제품의 등록 권리 침해 가능성, 향후 출원 시 유의점을 자문 요청함.

○ 자문의견

아이디어 공개 전에는 특허 또는 디자인 기초출원을 통해 선출원일을 확보해야 하며, 이후 완성 단계에서 정식 출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함.

타사 등록 특허·디자인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선행기술·디자인 검색(KIPRIS)을 우선 수행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에는 비밀유지계약(NDA)을 병행하여 아이디어 탈취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음.

완성된 제품 단계에서는 기능 중심의 경우 특허/실용신안, 형태 중심의 경우 디자인등록을 통해 권리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18

지역
강원

홈페이지를 타사 사이트를 참고하여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함

○ 내용(요약)

홈페이지 디자인 저작권과 실질적 유사성

○ 해당분야

UI/UX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홈페이지 제작 전문업체로, 발주처가 "타사 참고사이트의 구성이나 컨셉을 참고하여 비슷하게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문의함.

해당 요청은 참고사이트의 이미지를 직접 차용하지는 않지만, 레이아웃과 구조를 유사하게 구성하는 형태로, 이러한 유사성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함.

○ 자문의견

현재 문제의 핵심은 "레이아웃 · 구성요소의 창작성 인정 여부" 와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음. 일반적인 레이아웃이나 구조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독창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됨.

템플릿 기반이나 업계에서 통상 사용하는 형태라면 저작물성 부정 가능성이 높음. 만약 독창적인 UI/UX 구성이라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침해 가능성이 존재함.

19

지역
강원

기업명과 제품명을 각각 상표로 출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함

○ 내용(요약)

브랜드명 상표 출원

○ 해당분야

브랜드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창업기업으로 고체치약 브랜드를 운영하며, 정제형 고체치약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음.

A업체가 기업명과 제품명을 함께 또는 각각 상표로 출원할 때, 다음 사항들을 자문 요청함.

- 1) 별도 출원이 필요한지?
- 2) 적합한 상품 및 서비스 분류는?
- 3) 한글·영문 병기 출원이 가능한지?

○ 자문의견

기업명과 제품명을 각각 별도로 출원할 수 있으며,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거나 개별 출원도 가능함. 다만, 유사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으므로, 명칭 변경 또는 새로운 조합형 상표 개발을 권장함.

상표출원 전 선행상표조사 결과, 기업명 브랜드는 제3류(치약류)와 제35류(소매·도소매업)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다수 존재하여 등록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됨. 그리고 제품명 브랜드도 동일 상표는 없으나, 유사 발음의 상표가 존재하여 거절 이유 통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출원 시에는 상품류(제3류: 치약류)와 서비스류(제35류: 도·소매업)를 병행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0

지역
강원

행사용 부스와 테이블 · 의자가 디자인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함

○ 내용(요약)

행사용 부스 디자인의 등록 가능 여부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지역 축제 · 행사용 부스를 기획 제작하는 창업기업으로, 신규 제작한 이동식 쉘터형 부스 제품의 디자인 출원을 준비 중임.

기존에 사용 중인 테이블, 의자 등 행사 기자재 또한 디자인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디자인보호법상 등록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

○ 자문의견

1. 쉘터형 부스 디자인

심사 등록 대상으로 분류되어 선행 디자인의 공개 여부 및 창작성 판단이 필수적임. 검색 결과, 동일 · 유사한 육면체 형태의 개방형 부스 제품이 다수 확인되어, 신규성 및 창작성 흠결로 인한 거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단, 세부 구조나 조형적 차별성이 뚜렷할 경우 심사관 판단에 따라 등록될 여지도 있음.

2. 테이블 및 의자 디자인

"일부 심사 대상 디자인"으로 분류되어 간이 심사가 진행되며, 형식적 요건(도면 불일치, 기재 오류 등)만 검토됨.

팔각형 받침대, 삼각형 다리 구조, 일자형 연결판 등 조형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등록 가능성이 높음.

등록 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규성 또는 창작성 흠결 사유로 무효심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낮아 보임.

21

지역
강원

디자인의 형태·비례·색채·질감은 어디까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 내용(요약)

제품디자인의 권리보호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IT 기기용 제품디자인 및 부품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기업으로, 자사 개발 제품의 디자인이 어떤 범위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요청함.

- 1) 디자인이 지식재산권 또는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 2) 제품의 형태·비례·색채·질감 등 시각적 요소는 어디까지 독창성으로 보호되는지
- 3)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간의 구체적 구분 기준과 적용 범위는?

○ 자문의견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 중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미적 형상을 보호하므로, 세부 요소 중 '색채·질감'은 보조적 기준으로만 작용함. 외곽선·형태·비례 등 기본 조형 요소에는 창작성(독창성)이 있어야만 등록 가능함.

저작권은 문서·사진 등 2D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주로 이루어지며, 제품디자인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됨.

따라서, 제품 제작 시에는 디자인 출원을 우선 고려하고, 홍보용 이미지·영상 등은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통해 관리하는 이원적 보호 체계를 권장함.

22

지역
강원

해외에서 동일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 다른 상품류로 출원할 수 있는지 궁금함

○ 내용(요약)

브랜딩디자인

○ 해당분야

브랜딩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국내에서 OOOO 상표를 등록 사용 중이며,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중 동일한 명칭의 상표가 미국 내에서 타 기업에 의해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의드림.

- 1) 동일 명칭으로 상표출원이 가능한지
- 2) 상품류를 다르게 설정할 경우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 3) 그림 로고와 문자 로고를 같이 사용했을 때 등록이 가능한지

○ 자문의견

미국 내에서는 이미 OOOO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동일한 명칭으로의 출원은 거절 가능성이 높음.

상품류를 달리 지정하더라도 상품의 성질·용도·거래상 연관성이 인정되면 여전히 혼동 가능성이 존재함.

로고 결합 출원도 효과가 제한적이며, 문자 자체의 기술적·설명적 성격으로 인해 등록 거절 또는 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현지 대리인(미국 변리사)을 통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신규 네이밍 또는 복합 상표 전략으로 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웹툰·일러스트 작업에서 연예인 얼굴을 참고하면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인지 궁금함

○ 내용(요약)

유명인 캐릭터화로 인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사례경과

웹툰 및 일러스트 작업 과정에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참고하거나 캐릭터화하여 표현하는 경우,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자문의견

초상권은 개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가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공표되지 않을 권리로, 사생활 보호적 권리에 해당함. 그런데 연예인처럼 공적 인물의 경우, 사회적 인식상 초상 노출을 일정 부분 수인해야 하므로 일반인보다 제한적으로 인정됨.

과거에는 연예인의 얼굴을 참고한 일러스트가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초상·성명·이미지 등을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즉,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됨. 따라서, 연예인·유명인의 얼굴이나 특징을 상업적 캐릭터로 활용할 경우, 초상권을 넘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연예인 캐릭터를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 또는 명시적 비상업적 이용 고지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4

지역
강원

캐릭터의 권리 귀속과 보호 방법이 궁금함

○ 내용(요약)

캐릭터의 저작권과 권리 귀속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사례경과

캐릭터의 저작권 및 디자인권 보호 전략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카탈로그 표지 디자인 작업에 활용된 캐릭터를 중심으로 향후 굿즈,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 확장에 대비한 권리보호 방법과 저작권 및 디자인권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자문이 필요함.

또한, 외부 협업 시 캐릭터 활용 범위 및 권리 귀속 기준에 대한 법적 조언도 함께 요청드림.

○ 자문의견

1. 저작권 등록

캐릭터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이 없어도 권리가 인정됨. 다만, 분쟁 시 창작 시점과 저작자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창작 직후 저작권 등록을 권장드림. 캐릭터의 외형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지만, 이름(명칭)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2. 디자인권 등록

공개된 캐릭터는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어려움. 따라서 비용 및 절차 면에서 캐릭터는 디자인권보다 저작권 등록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율적임.

3. 협업 시 권리 귀속

계약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작자 개인에게 권리가 귀속됨. 공동 창작이나 외부 용역의 경우, 사전 계약서를 통해 권리 귀속·보상 기준을 명시해야 함.

특히 캐릭터 활용 목적(굿즈, SNS, 홍보물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포함할 것을 권장함.

25

지역
강원

기획 중인 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할 때,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함

○ 내용(요약)

유사 상표 등록

○ 해당분야

브랜딩디자인

○ 사례경과

현재 OOOOO 이라는 이름의 프리미엄 파티 의류 대여 서비스 아이템을 기획 중임. 사전 검색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철자의 상표가 다수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림.

- 1) 기존 등록 상표와의 유사도가 있을 경우 등록이 가능한지
- 2) 지정상품이 다르면 등록이 허용될 수 있는지
- 3) 향후 분쟁 위험이 존재하는지

○ 자문의견

OOOOO과 발음과 철자가 유사한 상표들이 다수 등록되어 있으며, 특히 패션·의류·온라인 유통 분야(제25류, 제35류)에서 중복이 확인됨. 이들 상표는 외관·발음·관념이 모두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 거절 가능성이 높음. 다만, 지정상품이 전혀 다른 분야(예: 식품, 교육서비스, 디자인 용역 등)로 설정될 경우에는 거래상 혼동 가능성이 낮아 일부 등록 가능성이 존재함.

상표는 철자·발음·의미 중 한 요소 이상에서 명확한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 철자 유사만으로도 거절될 수 있음. 브랜드명을 복합표장형(예: "OOOOO CLOSET", "OOOOO WEAR")으로 구성하거나, 철자 변형(예: "OO:OOO", "OOO'OO") 등을 통해 식별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효과적임.

출원 전 3~5개의 대체 후보명을 도출한 뒤 KIPRIS 유사도 검토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함.

브랜드 서비스명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 문의

○ 내용(요약)

유사 상표와의 충돌에 대한 차별화 전략

○ 해당분야

공예디자인

○ 사례경과

A씨는 창업 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고령친화 음성인식 기반 복지 지원 서비스 'OOOO'의 브랜드 네이밍을 기획함.

해당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반 복지 플랫폼으로, 고령층 대상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시 돌봄, 생활정보 제공, 복지 프로그램 안내 등을 수행함.

이에 따라 "OOOO" 명칭을 대한민국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자문을 요청드림.

- 1) 식별력 인정 여부
- 2) 선행 상표와의 유사 가능성
- 3)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

○ 자문의견

1. 식별력 판단

"OOOO"는 특정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지정 서비스(노인복지 프로그램 교육정보 제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와 직접 관련이 없어 식별력은 인정 가능함.

다만, 단어가 짧고 발음이 단순하여, 유사어와의 비교 시 유사 범위가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음.

2. 선행상표 검토

이미 "OOOO" 관련 상표가 여러 류(Class)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OOOO' 자체가 식별 가능한 표장임을 시사함.

다만, 41류의 "OOO◇" (AI 기술상담업), "OOO□□", "OOO△△△" 등과의 유사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특히 "OOOO"와 "OOO◇"의 경우, 음성인식·AI 관련 지정 서비스가 겹칠 가능성이 있어 거절 사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3. 등록 가능성 제고 방안

단순 문자형 "OOOO" 그대로 출원할 경우 유사 판단 위험이 존재하므로, 도형화(로고 결합), 조어형(예: OOOO+, OOOO:CARE) 등 조합형 표장으로 차별화할 것을 권장드림.

또한, 지정서비스업을 세분화하여 선행상표와 구분되도록 표현 조정이 필요함.

27

지역
대전·세종·충청

미술작업의 작품 컨셉(아이디어 및 표현 방식)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 내용(요약)

작품 컨셉 도용 우려, 저작권 및 디자인 보호 필요

○ 해당분야

설치미술 / 시각예술

○ 사례경과

A씨는 설치미술 작가로서 활동해왔으나, 결혼으로 경력 단절 기간이 있었음. 그 기간 동안 학교 선배가 본인의 작품 컨셉을 유사하게 사용하여 작업한 사실을 알았으나, 대처 방법을 몰라 대응하지 못함. 최근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이 모두 판매되면서, 향후 타인이 작업을 도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A씨는 작품 컨셉과 표현을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법적 방안을 알고 싶어함.

○ 자문의견

설치미술과 같은 예술 작품은 지식재산권 중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의 대상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임.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우선순위가 인정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 누가 먼저 창작했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타인의 모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임을 작품 자체나 홈페이지 등에 명시할 것을 권장함.

또한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창작 일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중요한 작품의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 창작일에 대한 입증 편의를 확보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작품보다는 모방이 용이하고 창작성이 높은 작품 위주로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28

지역
대전·세종·충청

유사한 작품이 온라인에 게시된 경우, 제 작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 내용(요약)

작품 컨셉 도용 의심에 따른 저작권 보호

○ 해당분야

시각예술

○ 사례경과

A씨는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에서 수상한 졸업 작품을 보유 중임. 그런데 최근 SNS에 게시된 작품 중 본인의 작업 컨셉, 구현 방식, 문제 해결 방식, 사용자 체험 방식과 매우 유사한 작업물을 발견함. 본인 작품의 핵심 아이디어와 구조가 그대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며, 의도적인 모방이 의심됨. 이러한 상황에서 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 자문의견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미술 저작물에는 회화,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 등의 저작물이 포함되며,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보호의 대상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대법원 판례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어야 하며, 기능적 아이디어나 컨셉은 보호되지 않고, 표현된 형상 자체가 보호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음.

저작권 침해 판단 시에는 "전체적인 인상(심미감)"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1330 판결 등).

한편, 본 건의 유사성 주장 중 다수의 내용이 아이디어·기능·절차·방식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 '표현 형식'이나 '표현 방식'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A씨의 디자인은 주로 등근원과 원추형 구조인 반면, 상대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사각 기둥 형태이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심미감이 현저히 다르게 인식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양 디자인의 조형적 형상이나 구성은 형태·비례·질감·색감 등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디자인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응용미술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작품이나, 비교 대상 디자인과는 조형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저작물로 판단됨.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침해 대상이 볼 수 있는 '창작 표현'의 동일성 또는 본질적 부분의 유사성이 확인 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저작권 등록된 캐릭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하는지

○ 내용(요약)

저작권 등록 캐릭터의 분쟁 예방 및 권리관계 정비

○ 해당분야

캐릭터디자인

○ 사례경과

A씨는 현재 저작권 등록을 마친 캐릭터를 보유 중이며, 해당 캐릭터 디자인과 그림 작업은 소속 직원이 담당함. 캐릭터를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로 활용하면서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고려할 법적 이슈와 직원이 작업한 캐릭터와 관련하여 사전에 어떤 권리 정비나 계약 조치를 해두어야 하는지 자문을 요청함.

○ 자문의견

1. 캐릭터 IP 라이선싱 관련 지식재산권 보완 방안

디자인권 등록의 필요성 : 저작권은 표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디자인권은 특정 제품에 구현된 시각적 요소, 즉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보호함. 캐릭터가 침구류 등 구체적인 상품에 적용될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된 디자인에 대해 각각 디자인 등록을 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효과적임.

1출원 1디자인 제도의 난점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개별 물품에 대해 등록해야 함. 즉, 하나의 캐릭터라도 침구류, 의류, 문구류 등 적용되는 상품이 달라지면 각각 디자인을 등록해야 함. 이는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 시 광범위한 등록의 어려움과 비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현실적인 방안 : 모든 예상 상품에 대한 디자인 등록이 어렵다면, 실제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생산할 특정 물품에 대해 디자인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보임. 디자인권은 특허와 달리 확장 해석의 여지가 적어 폭넓은 권리 행사가 어려움.

2. 직원이 디자인한 캐릭터의 저작권 귀속 및 보상 문제

문제점 :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인과 피고용인 양자의 입장이 고려되고 있음. 고용인은 계약에 의해 특허권 등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고, 피고용인은 보상규정에 의해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등의 범위는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으로 저작권에는 적용되지 않음.

저작권 등록된 캐릭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하는지

○ 자문의견

직무발명 관련 : 디자인의 경우 창작자(직원)에게 원천적인 권리가 있으나, 회사 내부 규정(직무발명규정 등)에 따라 회사 명의로 출원 및 권리 승계가 가능함. A씨는 이미 직무발명 규정을 잘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보임.

저작권법 관련 : 저작권법은 직무발명에 대해 다루고 있지 발명진흥법과 별개의 법률이므로, 직무발명 규정만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기 어려울 수 있음. 특히 직원이 퇴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임. 이러한 규정은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직무발명 규정과 유사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추가 자문 필요성 : 저작권의 경우 로열티 발생 시 창작자와의 분배 문제가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음. 이 부분은 저작권법에 능통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명확히 해결하는 것이 좋아 보임. 저작권과 관련된 수익 분배 문제를 명시하여 다시 자문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30

지역
대전·세종·충청

지자체 상징 캐릭터를 활용한 공동개발 굿즈의 디자인권 보호 방안

○ 내용(요약)

굿즈 디자인의 디자인권 출원 전략 및 캐릭터 IP 활용범위 검토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캐릭터라이선스, 공동개발

○ 사례경과

지자체 관광기획상품(굿즈) 개발지원사업에 협업기업과 함께 지자체의 상징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시리즈를 공동 개발함.

현재 시제품 제작은 완료되었으며, 양산 및 판매를 앞두고 있음. 개발된 10종의 상품 중 1종은 디자인권 출원을 계획하고, 나머지 9종은 내부 권리 등록 또는 미출원으로 검토 중임. 지자체의 상징 캐릭터는 해당지자체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어, 디자인 출원 시 해당 IP와의 충돌 가능성, 출원 주체 및 공동권리 여부, 캐릭터 활용 범위의 제한 등 법정 쟁점을 확인하고자 함.

또한 출원 전략을 명확히 하여 추후 유사 제품 모방 및 침해를 예방하고, 공동 개발 구조에서의 권리 귀속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고자 함.

○ 자문의견

본 프로젝트는 양사의 공동 개발이므로, 디자인권 출원 시 공동 출원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임(단, 계약상 한쪽 기업에게 창작 권리를 이전하는 조항이 있다면 단독 출원도 가능).

지자체의 상징 캐릭터는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공 IP로,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 또는 사용 승인서에 근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해당 디자인에 캐릭터의 식별 가능한 형태(얼굴, 표정, 색상 등)가 포함된다면, 이는 독자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며, 디자인권 출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디자인권은 독창적인 조형·색채·결합을 보호하며, 기존 공공캐릭터가 눈에 띄게 포함될 경우 디자인보호법 상 등록 거절사유(공공질서, 타인의 저작권 등 저촉)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출원 디자인이 캐릭터 자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고, 전체 제품 조형에 부속된 요소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키프리스 검색 결과, 출원을 계획한 제품에서 지자체 캐릭터 형상을 적용한 유사 디자인의 등록 사례는 존재하지 않아 신규성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음.

30

지역
대전·세종·충청

지자체 상징 캐릭터를 활용한 공동개발 굿즈의 디자인권 보호 방안

○ 자문의견

다만 제품 외형이 지자체 상징 캐릭터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조형적 창작성 부족으로 인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캐릭터 요소는 재해석 또는 부분 활용하고, 기능성과 결합된 창작적 디자인 요소(비례, 재질 조합, 표현 방식 등)를 강조하여 조형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총 10종의 제품이 개발되었고, 현재 1종만 출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는 권리보호에 취약할 수 있음. 각 제품의 독점적 권리 확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

등록이 불가하거나 창작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디자인권 외에도 제품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표권 출원, 저작권 자동 발생 및 활용, 제품 판매 시 저작권 표시를 고려할 수 있음.

물론 지자체 상징 캐릭터 자체의 저작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으므로, 사용 범위 내에서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음.

31

지역
대전·세종·충청

타인의 캐릭터 IP를 활용한 제품에서 저작권 범위와 재판매 제지

○ 내용(요약)

캐릭터IP 사용 시 제품 저작권 인정 범위 및 재판매 제지 가능 여부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캐릭터라이선스, 유통관리

○ 사례경과

지자체의 상징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를 개발함.

해당 캐릭터의 IP는 당사가 아닌 지자체에 귀속되어 있으며, 당사는 라이선스를 통해 일부 디자인 요소에 캐릭터를 포함함. 계약은 비독점적 브랜드 이용 허락계약으로 오프라인 판매 및 행사장 판매 가능한 한정 계약임.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문을 요청함.

- 1) 당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해 타기업이 비슷한 모방 제품을 만든다면 대처가 가능한 것인지
- 2) 비독점의 의미가 무엇인지
- 3) 제3자가 개인적으로 제품을 구매해 재판매할 수 있는지

○ 자문의견

타 기업이 모방제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저작권자 대처가 가능함. 해당 상황을 저작권자에 알려 저작권 침해에 대해 대응할 수 있고, 만일 그에 따라 자문요청기업에 손해배상이 발생한다면 타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함.

비독점은 저작권자가 다른 기업에 대해 브랜드 이용 허락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자문요청기업이 브랜드의 이용을 독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제작, 판매하는 특정 제품류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므로,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보임.

다른 기업이 재판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허용됨. 다만, 만일 사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재판매 금지 조항을 합의하에 삽입할 수 있음. 또한, 브랜드의 저작권자가 브랜드 재판매 저작물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음.

32

지역
대전·세종·충청

라이선스를 통해 활용한 캐릭터 디자인의 디자인권 출원 가능 여부

○ 내용(요약)

캐릭터 활용 제품의 디자인권 출원 가능성 및 권리범위 검토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캐릭터라이선스, 디자인출원

○ 사례경과

A업체는 B업체로부터 'OOOO' IP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신청하여, 해당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 디자인을 제작함. 현재 이 디자인을 바탕으로 디자인 출원을 검토 중임.

- 1) 라이선스를 통해 제작된 제품이 디자인권 출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 2)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및 권리범위 설정에 관한 사전 상담이 가능한지 자문을 요청

○ 자문의견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함. 이 건 디자인의 경우 형상·모양·색채가 결합한 것으로서, 디자인 등록출원의 대상임.

그런데 일반적인 질의에서 대부분 '출원 가능한지'의 문어가 '출원하면 등록 가능한지'의 의미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건 디자인의 경우 B업체의 OOOO 캐릭터(이하 '선행 디자인'이라 함)와 유사성이 높아 현재 상태로는 등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다만, 선행디자인이 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비중이 낮은 경우, 예를 들면 캐릭터를 상표나 로고처럼 물품의 일부에 표시하는 경우라면, 디자인등록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A업체는 이 건 디자인을 최대한 반영한 제품을 제작할 예정이라, 이 부분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음.

선행 디자인과 형상·모양·색채의 유사성을 따지기 전에, A업체가 B업체와 맺은 브랜드 상품화 이용허락 계약 2건(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함)에 의해 B업체의 허락 없이는 신청기업이 이 건 디자인 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되기 어려워 보임.

왜냐하면, 이 건 계약에 신청기업이 선행디자인에 기반한 2차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관련 지식재산권이 B업체에 귀속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임.

애니메이션 속 이미지를 모형으로 재현한 도서 출간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 내용(요약)

저작물 2차적 이용 및 콘텐츠 제작

○ 해당분야

시각예술, 콘텐츠제작

○ 사례경과

2025년 연말 출간을 목표로, 유튜브의 음식 모형 작업을 바탕으로 한 도서를 기획·제작 중임.

도서에는 작가가 수작업으로 재현한 '애니메이션 속 음식 모형' 이미지가 일부 수록될 예정. 이에 따라, 원 저작물(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 및 모형 이미지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한 도서 출간 시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출판권 계약이 필요한지 등 법률적 리스크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

○ 자문의견

유튜브의 채널에 있는 여러 아이템 중 유명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음식모형의 경우, 먼저 창작성이 인정받은 저작물인지가 중요함. 만약 창작용이성이 없는 일반적인 음식 모형이라면 저작권이 없으나, 독특한 개성이 담긴 음식 모형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모형을 만드는 것은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에 해당함.

따라서 개별 음식 모형에 대한 추가적인 저작권 발생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저작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또한 애니메이션 속 주요 인물 등의 이름을 인용하는 경우, 정당 사용이 문제되며, 통상적으로 저작물의 인용은 교육·연구·비평 등의 경우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상업적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그러므로 저작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을 담당하는 업체에 사용 허락 여부를 문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저작물의 사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출판물 판매금지 가치분 등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임.

3D 설계 도면을 유료로 판매할 때 저작권 보호와 불법 공유 대응

○ 내용(요약)

3D 설계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및 불법 공유 대응 방안 검토

○ 해당분야

디지털콘텐츠, 산업디자인, 저작권, 라이선스계약

○ 사례경과

완제품이 아닌 설계 도면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는 사업 모델을 추진 중이며 특히 3D 프린팅이 가능한 3D Mesh 데이터 파일(3D printable file)을 유료로 판매하고자 함. 이에 따라 해당 파일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요청함.

- 1) 저작권 보호 범위
- 2) 창작자 명시 및 변경 금지, 타인공유 금지 조항의 법적 유효성
- 3) 파일 다운로드 전 'License Agreement(사용자 동의 조약)' 체결의 실효성, 불법 복제·공유 발생 시 법적 대응 방법

해당 사업은 디지털 파일을 직접 배포하는 형태이므로,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 및 계약상 권리보호 수단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자 함.

○ 자문의견

3D mesh file은 창작성이 인정되며 당연히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임. 다만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 등을 통해 전달되는 특성상 복제 등이 가능할 수 있음.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받고자 하는 user 등을 대상으로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동의를 전제로 다운로드 받도록 해야 함.

물론 약의적인 유저가 이를 어기는 상황은 언제나 벌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EULA의 구성을 잘 하셔야 함.

만약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술적으로는 상기 3D mesh file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파일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기인하여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야 함.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위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EULA에 동의한 경우에만 다운로드받도록 하고, 파일에 저작권이 자문 의뢰 기업에 있음을 명시하며, 불법적으로 공유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됨.

35

지역
대전·세종·충청

신규 브랜드 개발 시 폰트·저작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 내용(요약)

브랜드 관련 폰트·저작권·디자인권·특허 등 권리 보호 방안 검토

○ 해당분야

브랜드디자인, 시각디자인,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함에 따라, 로고·브랜드명·디자인요소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이 필요합니다.

○ 자문의견

검토상표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식별력이 없는 단어와, 식별력이 있는 단어 'OOOOO'로 구성됨.

검토상표 'OOOOO'에 대한 선등록상표를 검색한 결과, 선등록된 유사한 상표가 존재함. 선등록상표는 'OOOOO_M'으로, 검토상표의 식별력 부분인 'OOOOO'와 동일하여 상표간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어 검토상표를 출원시 선등록상표에 의하여 거절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검토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선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가능성도 존재함.

하지만, 선등록상표의 갱신등록 기한이 곧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기간까지 갱신 여부를 확인한 후 선등록상표가 갱신등록되지 않으면, 검토상표를 조속히 출원하여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공공행사 디자인을 의뢰받아 제작했으나, 주최 측이 동의 없이 기획사를 변경한 뒤 기존 디자인을 행사에 사용한 경우 대처방안

○ 내용(요약)

디자인 무단 사용 및 부정경쟁행위

○ 해당분야

공간 · 환경디자인

○ 사례경과

공공행사 디자인 제작을 의뢰받아 장기간 시안을 수정 · 보완하여 완성했으나 행사 직전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기존 기획사를 교체한 뒤, 당사의 동의 없이 기존 디자인을 행사에 사용함. 행사 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런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함.

○ 자문의견

본 건 공공행사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저작권도 산업디자인 특성상 성립 가능성이 낮음. 다만 주최 측이 귀사의 디자인을 동의 없이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도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선 침해자에게 부정경쟁행위 및 디자인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요구를 내용으로 한 경고장(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권장되며, 이후 반응이 없으면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소송 및 조정 시 제안서, 디자인 시안, 이메일 · 메신저 기록, 행사 사진, 손해액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함.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디자인이 최종 불합격 후 무단으로 사용되어 동일 제품이 출시되고 해외에서 판매된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여부

○ 내용(요약)

면접 과정에서 제출한 디자인 무단 사용 및 권리 침해

○ 해당분야

패키지디자인

○ 사례경과

A씨는 B업체에 지원하여 1차 면접에 합격한 후, 2차 면접을 위한 과제를 수행함. 수행한 과제는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용기 디자인 구조를 제안하는 것과 패키지를 리뉴얼하는 것이었음. 이후 기업으로부터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음. 그로부터 약 1년 뒤, 우연히 해당 기업의 채용공고를 확인하던 중, 과거 면접 때 과제로 제출했던 디자인 패키지가 동일하게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됨. 해당 디자인의 공식 판매 일자는 1년 전 제가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약 20일 뒤였음. 제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1년간 해외 유통사에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함.

○ 자문의견

A씨가 B업체의 면접 과정에서 제출한 디자인과 기업에서 출시한 디자인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면접 과제를 제시할 당시 B업체는 디자인 권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자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따라 지원자는 B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및 차목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음.

당장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는 비용과 절차 부담이 예상되므로, 먼저 면접 과제로 제출한 디자인의 무단 사용 경위를 확인하는 메일을 보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음. 이후 답변이 없거나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고, 그럼에도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한 민·형사 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부친이 창작한 상표와 로고를 장남이 무단으로 사용·재등록하여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중인데 이에 대한 상표등록무효 가능 여부

○ 내용(요약)

친족간의 상표·로고 무단 사용에 대한 분쟁

○ 해당분야

로고디자인

○ 사례경과

B업체의 창업주인 A씨의 부친은 오랜 기간 회사를 운영하며 직접 창작한 상표와 로고를 사용해 옴. 부친은 가족인 장남이 회사를 이어간다는 이유로 상표를 양도하지 않고 사용만 허락하였으나, 장남은 개인 회사를 설립한 뒤 해당 상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며 마치 회사를 승계한 것처럼 광고하고 영업을 이어감. 또한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등 부친의 신뢰를 이용한 행위도 있었음. 이후 장남은 부친의 상표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조건부로 자신에게 사용 승인을 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으며, 부친이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자 해당 상표는 취소된 뒤 장남의 법인 명의로 다시 등록되었음. 장남은 부친에게 상표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친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당시 친족 간 소송이 불가능하여 진행하지 못함. 이에 부친이 직접 창작한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등록한 부분에 대해 상표등록무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함.

○ 자문의견

문자 상표의 경우, 상표권자가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나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된 상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취소 확정 후 3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음. 따라서 특정인이 문자 상표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취소 확정 후 3년 이내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음. 또한 청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기망했다는 주장은 직접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움.

로고 상표의 경우,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하는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요자 인식과 부정 목적이 모두 증명되어야 함.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 인식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후속 사용자가 부정 목적 없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음. 또한 사업 관계와 상표 사용 상황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결과에 영향을 미쳐, 무효심판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종합하면, 문자 상표의 취소심판 청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재등록 가능성과 무효심판 인정 여부는 제한적이며, 로고 상표의 경우 수요자 인식, 사용 목적, 사업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움.

해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자체 제작한 제품 6종을 출시할 예정인데, 유사 제품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 제품별 디자인 등록이 별도로 필요한지

○내용(요약)

해외 온라인 판매 제품 디자인 상표 보호 및 유사품 복제 방지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사례경과

해외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면서 자체 제작한 교육용 키트 제품(총 6종) 출시를 계획 중임. 다만 유사 제품이 쉽게 복제될 수 있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려되어, 현재 해외 상표 출원과 진품 인증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 중임. 이런 상황에서 각 제품별로 해외 디자인 등록을 모두 진행해야 하는지, 그렇게 했을 때 비용 대비 보호 효과가 충분할지 궁금함.

○자문의견

향후 분쟁 상황에서 상표와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미국 연방 상표법(USPTO)과 디자인법에 따라 브랜드와 디자인을 모두 출원·등록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임. 다만, 소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은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함. 미국에서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등록하려면 반드시 미국에 등록된 변호사를 통해야 하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선사용 주의를 채택하는 등 제도 차이로 인해 구비서류 준비에 주의가 필요함. 해외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브랜드 등록 제도를 운용하여, 등록된 브랜드 소유자가 위조품 또는 유사 상품 판매 계정의 정지를 요청하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만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음. 이러한 시스템은 위조 상품 등으로 인한 사업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먼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브랜드 등록 제도를 활용해 등록된 브랜드 소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임. 또한 일부 플랫폼에서는 상표 출원이 완료되지 않아도 브랜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임시 제도를 제공하지만, 이는 해외 시장 진출 측면에서는 한시적 조치일 뿐이며,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미국 특허청에 상표를 정식 등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이 됨.

배리어프리 모바일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사업 특성상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2차 저작물 활용에 대한 저작권법 저촉 여부가 궁금함

○ 내용(요약)

저작권 침해 여부 문의

○ 해당분야

서비스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사운드인식 기반의 배리어프리 영화 모바일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음. 2차 저작물인 화면 해설과 문자 자막은 장애인 기관 및 단체에서 만들어지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편 당 탑재비를 지원받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기관에서 제작한 2차 저작물을 당사의 앱에 탑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법 저촉 여부가 궁금함.

○ 자문의견

본 업체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것이고, 저작권의 침해가 되려면, 원저작자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하고, 또한 저작권의 모방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원저작권과 침해저작권 간의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됨.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여러 규정 중에서 저작권법 제33조 및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의 복제 등에 관해서 규정된 사항을 살펴봐야 함. 장애시설이나 장애기관에서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보조적인 자료 즉,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장애인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문제는 본 업체가 장애시설이나 장애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음.

만약, 본 업체가 제작하는 모바일 앱이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만들기는 하지만, 보조적인 자료로서 대체 자료로 만들 경우에 이러한 대체자료를 장애기관이나 장애시설에 납품을 하여 실질적으로 장애기관이나 장애시설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애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위로 보아 저작권의 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영화위원회로부터 편당 지원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 업체가 제작하여 장애기관 등에 납품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확률도 충분히 있음.

결국은 저작권법 제33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원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본 업체가 모바일 앱에 탑재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면 아니 될 것이고, 가능하다면 장애시설이나 장애기관에 이러한 모바일 앱을 납품하는 방식만이 가능할 것임.

41

지역
부산

친환경 전시 구조물을 제작/렌탈하는 브랜드를 운영 중인데, 당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 타 업체에서 제작/유통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함

○ 내용(요약)

자사 제품 보호법

○ 해당분야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A업체는 친환경 전시 구조물을 제작/렌탈하는 브랜드 '△△△'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해당분야의 선두주자임을 자부하고 계시나, 지적재산권 등록은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자사 제품 보호 및 유사품 대응 방법을 문의함.

○ 자문의견

디자인보호를 위한 법적수단 방법 :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을 통해 종합적인 보호가 가능함.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대응방안 : 민사적으로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음. 형사적으로도 디자인권 등록을 한 후에,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디자인권 등록 및 보호를 위한 절차 : 디자인권은 20년간 독점권행사가 가능하며,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통하여 모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 : 현황파악을 통하여 증거 수집을 하고, 경고장발송을 할 수 있음.

향후 디자인보호를 위한 제언 : 디자인 개발과정을 기록하여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조치에서 활용할 수 있음. 또한 디자인 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 디자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함.

제품명에 지역명과 꽃 이름이 들어가지만, 관련 원재료는 사용되지 않는 제품을 기획함. 이러한 이유로 'OOOOO' 이라는 제품명에 법적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을지

○ 내용(요약)

제품명 법적문제 여부

○ 해당분야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도시의 아이덴티티와 지역의 시화인 동백의 색감을 담은 주류 제품을 기획한 후, 'OOOOO'이라는 제품명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알아보고 계심.

○ 자문의견

상표의 사용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출원을 진행하여 상표등록을 받고 나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상표출원을 진행하지 않고, 단지 상품에 상표명으로서 상표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임

그리고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심사관으로부터 상표등록요건을 확인받고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가 되어야만 상표등록이 되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상표등록요건으로 첫째, 상표 자체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둘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없어야만 등록이 됨.

위의 첫번째 등록요건인 상표자체의 식별력에 대해서 언급해 보면, 상표자체가 보통명칭, 관용명칭, 성질 표시명칭, 유명한 지리적 명칭, 간단하고 흔한 명칭 등은 상표자체가 식별력이 없는 상표이므로 상표자체가 등록이 되지 않으며, 반대로 이야기하면, 앞에서 언급한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 상표등록이 가능함.

그리고 두번째 등록요건인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없어야 하는 조건은 대표님이 상표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우선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 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없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함.

'OOOOO'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첫째 'OOOOO'가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는 상표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될 만한 즉, OO이라는 지리적 명칭과 OO꽃이나 OONाम루로 만든 술이라는 성질표시명칭의 단순결합이라고 하여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해서 상표등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만약, 이러한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표자체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왜냐하면 이러한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이기 때문임.

그리고 'OOOOO'가 상표자체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OOOOO'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자문위원이 선행상표를 서치해 본 결과, "OOOO막걸리", "OO이" 등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개인적인 견해임으로 참고 바람.

결국 'OOOOO' 또는 'OOOO꽃'의 사용이 법적 문제의 발생소지여부가 궁금하실 텐데 이는 결국 'OOOOO'의 상표가 식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으로 귀결되고, 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국밥 체험 매장'을 오픈하려 하며 구상한 체험의 시스템을 특허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 내용(요약)

시스템의 특허 등록 방법

○ 해당분야

서비스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국밥과 관련된 체험 시나리오를 구상하였고, 이것을 후발주자 또는 거대자본 외식기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를 원함.

○ 자문의견

1. 특허등록 1차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에 대해 기술판단을 하였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체험에 대해 시스템 장치 또는 기구와 결합되는 구성이 필요함. 코스로 주문 시에도 (예: 조리 기구나 키오스크 등) 예시와 같은 시스템 장치 또는 기구와 결합되는 구성이 필요함.

2. 다른 분야의 기존 체험 특허를 검색하여 돼지국밥 체험 매장 아이디어와 비교·분석이 필요함. '쉐이크 김치', '덤범김치'와 검색하여 비교해 봐야 함.

- 햄버거 프랜차이즈 요식업 체험 방법 (등록특허번호 : 10-2405130)
- 건축현장의 추락 체험 장치 (등록특허번호 : 10-1744327)
- 체험형 음악 학습 방법 (등록특허번호 : 10-2261746)

44

지역
부산

관광 상품 세트 제품 출시를 위해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SNS에서 발견한 포장재의 지기구조에서 착안하여 디자인을 구상함. 구조는 유사하나, 인쇄와 구성 요소 등은 당사에서 자체 개발하여 제작했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여지가 있는지

○ 내용(요약)

패키지 디자인 지식재산권

○ 해당분야

패키지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제품의 패키지를 개발하였고, 개발한 패키지가 출시될 경우에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패키와의 향후 지식재산권의 분쟁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본 법률상담을 신청하게 됨.

○ 자문의견

1. 참조한 지기구조가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참조한 지기구조는 보내주신 SNS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고, 국내가 아닌 해외의 한 카페에서 찍은 영상으로 보이며, 참조하신 지기구조는 지식재산권 중에서 특히, '디자인권'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됨을 설명 드리며, 다만, 디자인권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등록권자를 찾자 함에 있어서 제품의 도면만으로 디자인권 등록여부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현행 디자인 선행 사이트(키피리스 이용)를 이용하더라도 모양으로 검색할 수는 없고, 물품의 명칭(예, 포장용 박스 또는 상자)으로 검색으로 도면을 일일이 다 확인하는 방법 정도 밖에는 없는 실정임.

2. 동일한 지기구조를 사용할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한 지기구조가 디자인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발생하지 않으며,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권 침해도 각 나라별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해당되는 나라에서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고, 해당되는 나라에서 동일한 디자인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침해에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참조한 지기구조가 디자인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 하려면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도 침해에 해당하며, 다만 유사한지 여부는 법원의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됨.

3. 당사가 해당 지기구조를 변형하여 개발할 경우, 자체적으로 지식재산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당사가 해당 지기구조를 변형하여 개발하더라도 기존의 디자인된 제품과 비교해서 얼마나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서 디자인등록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거절이 될 수도 있으며, 선행 디자인된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출원에 대해서도 거절이 되며, 아울러 선행 디자인된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출원에 대해서도 거절이 되므로, 당사가 디자인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선행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아닌 전혀 다른 디자인임을 인정받아야만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출원이 등록이 될 수 있음.

자체 개발한 사이트의 모티브가 있으며 또한 유사 프로그램도 존재하는데, 향후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 내용(요약)

저작권 침해 여부

○ 해당분야

UX/UI 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가 자체 개발 중인 사이트는 '△△△'이며, 이 프로그램은 '○○○' 사이트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으며, 그 외 유사 프로그램으로는 '□□□'와 '◇◇◇' 등이 있다고 하였으며, 향후 '○○○'과의 유사성에 대해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본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황.

○ 자문의견

문제가 될 만한 지식재산권은 저작권일 수 있으며,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의 한 형태이므로 저작권 문제를 깊게 다룰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프로그램간의 동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 업체의 대표님 말씀대로 실행 파일이나 소스 코드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림.

다만, 저작권은 프로그램의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작물의 형태로서도 구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UI나 UX 등이 극히 유사하여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라면 또 다른 형태의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UI가 '△△△'과 '○○○'이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는 개인간의 침해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저작권침해임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즉 '○○○'측에서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하여 저작권침해 판결을 받은 경우에 저작권침해에 해당됨을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UI나 UX 등이 '○○○'과 다르게 보이도록 수정하거나 변형하는 것이 추후 분쟁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임. 그리고, 두 사이트 간에 동일한지 유사한지 여부는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1인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음.

때문에 가급적 UI나 UX를 조금 다르게 구성하여 '○○○'측으로부터 미연에 경고장 등을 받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사 제품 중 일부는 한국 및 미국에서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나, 한 제품은 PCT 해외 출원 기한을 놓쳐 해외 진입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 다른 신제품은 출원 단계에 있어 해외에서 강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특허 맵 전략이 필요함

○ 내용(요약)

해외 진출 시 특허 문제

○ 해당분야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A업체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동가방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미국 및 한국에는 특허등록이 되어 있으나 한 제품에 대해서는 PCT특허출원을 한 이후 일정기간이 흐른 상태에서 해외국가로 진입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상황임.

○ 자문의견

본 업체는 이미 자사 제품 중 일부에 대해서 한국 및 미국에 특허출원 및 등록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는 없으나, 자사 제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한국출원 및 PCT출원을 진행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만, 한국출원을 기초로 1년 이내에 PCT출원을 진행한 경우에는, 한국출원을 진행한 날로부터 2년 6개월(30개월) 이내에 해외 개별국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해야만 해외 개별국의 특허출원날짜를 한국 출원 날짜로 소급시켜 주는데, 본 업체는 PCT출원을 한 이후에 한국출원을 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도과해 버린 상황임. 이러한 경우에는 PCT출원 자체가 취하 간주되어 소멸되며, 더 이상 해외의 개별국으로 특허출원을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특히 한국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에 국제공개가 되므로 다시 출원을 진행하더라도 공개된 공보에 의해서 거절됨을 안내드립니다.

정리하면, PCT출원을 한 이후에 한국출원일로부터 30개월이 도과한 경우에는 PCT출원 자체가 취하 간주되어 없어지게 되므로 더 이상 해외출원을 유지할 수 없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출원해도 거절될 확률이 높고,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특허출원을 해야 할 것임.

한국 및 해외의 특허동향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동향조사(특허맵)를 특허법률 사무소에 용역의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허동향 조사보고서에 나온 결과물을 통해서 특허맵 전략을 새롭게 짤 수 있음. 특허동향조사의 경우는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대략 몇 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제품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외주업체임 . 클라이언트가 제품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요청을 하여 출원 절차와 방법을 찾고 있음. 전반적인 절차가 궁금함

○내용(요약)

제품디자인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

○해당분야

지식재산권

○사례경과

A업체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사에서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완성한 이후에 디자인출원을 하고 싶어함에 따라 제품 디자인에 대한 출원, 기간 및 비용 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함.

○자문의견

본 업체가 제품디자인을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디자인출원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고, 특허는 기술적인 사상을 그 대상으로 하고, 디자인은 물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것이라 상세히 설명 드렸으며, 본 업체가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은 특허가 아닌 디자인 출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안내드림.

디자인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면과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면의 경우 3d 도면 또는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및 저면도 총 7개의 도면이 jpg파일 형태로 필요함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며, 디자인출원 이후에 등록까지 대략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을 알려 드림.

그리고 디자인출원을 진행함에 있어서 창작자와 출원인이 기재가 되며, 창작자는 개인으로서 통상적으로 디자인업체의 디자이너가 이에 해당되고, 출원인은 수혜기업인 법인 또는 개인 대표님인 경우가 대부분임을 말씀드림.

그리고 디자인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면 등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구비만 된다면 일주일 이내로 진행이 가능함을 안내드림.

그리고 디자인출원을 진행하기 전에 외부에 공개시키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 드렸으며, 인스타, 블로그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 자체로 추후 디자인출원에 대한 거절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림.

개발한 제품을 직접 출원 하였으나, '디자인 출원 거절 사유 의견 결정서'를 받음. 어떻게 보완해야 좋을지

○ 내용(요약)

디자인 출원 거절 이후 대처

○ 해당분야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A업체는 제품을 개발한 이후에 디자인출원을 진행을 하였고, 디자인출원에 대한 거절통보가 왔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상황임.

○ 자문의견

A업체는 디자인출원을 완료한 이후에 특허청의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상태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면 상에서 글자나 로고가 문제가 되며 이러한 이유로 거절이유를 낸 것으로 보이므로, 보정서를 통해서 삭제를 하고 등록을 시켜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디자인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임.

특히 디자인출원 시 중요한 것이 도면인데, 이러한 도면이 양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하면, 이러한 도면에 문제가 있을시 보정을 통해서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면 제출 시 신중해야 함을 당부 드리며, 특허청 ☎1544-8080 으로 전화를 하면 절차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를 해 주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특허청 상담실로 전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그리고 디자인출원 및 등록 때까지 기간이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소요되며, 디자인 등록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20년의 존속기간이 존재하고,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만 디자인권을 유지할 수 있음.

전통식품 선물세트 패키지가 타사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음.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 내용(요약)

전통식품 선물세트 패키지 디자인 유사로 인한 디자인권 침해 내용증명 수령 사례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디자인권 침해 대응

○ 사례경과

A업체는 조청 단일품목을 생산하는 전통식품 제조업체로, 연 매출 4천만 원 규모의 1인 소기업임. 2025년 4월 18일, 자사 선물세트 패키지가 디자인 침해를 했다는 내용증명을 수령함. 과거(2017년경) 내용증명 발신자로 추정되는 업체의 방문을 받아 패키지 상담을 받은 적은 있으나, 해당 디자인은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은 당시 상담받은 디자인과 상당히 다른 형태임. KIPRIS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발신자는 다수의 디자인을 등록해 두었으며, 그중 일부가 자사 제품과 유사한 형태를 보유하고 있었음.

○ 자문의견

A업체는 디자인등록 제30-0872517호의 디자인권자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주장 내용증명을 접수하였음.

본건 등록디자인은 케이스 내부에 수납대상물을 끼울 수 있는 내지를 가진 포장용 상자로, 신청기업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내지의 함몰부, 경사면, 끼움공 형태 등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당 디자인의 출원일(2015.3.10.) 이전에 동일·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이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디자인의 요부(주요 특징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선행디자인 문헌조사(KIPRIS 등 검색)를 실시하여 기존에 공개된 유사 디자인을 확보함으로써 비침해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향후에는 경고장(내용증명)에 대한 답신서를 신중히 준비하고, 민사·형사 대응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문가(변리사·변호사)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 바람직함.

신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출원 가능성과 제품 특허 등록 가능 여부

○ 내용(요약)

커피 전동 그라인더 디자인 출원 및 정전기제거 이오나이저 장치 특허 가능성 검토 자문

○ 해당분야

디자인 출원 /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

○ 사례경과

A업체는 커피 전동 그라인더 신규 디자인(원통형 본체·요철무늬 외관·투명 하부 케이스)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디자인 출원 가능성과 정전기 제거용 이오나이저 장치 특허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함.

신청인은 유사디자인을 검토 후 신규성은 확보 가능하나, 창작성 판단 경계선상임을 인지함. 정전기 제거용 이오나이저 장치는 기능적 차별성이 확인되어 특허 출원 병행을 고려 중임.

선행디자인 조사 결과, 요철무늬 외관과 투명 하부 케이스를 가진 제품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특히 수동식 그라인더(디자인등록 제30-1227500호) 및 온라인 유통 중인 소형 전동형 제품과 형태적 유사성이 확인되었음.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은 존재하지 않으나, 용이창작성 거절 가능성이 제기됨.

○ 자문의견

1. 디자인출원

선행디자인과 차별화된 구체 요소(요철 패턴, 비례, 버튼위치 등)를 강조하면 신규성 인정 가능성이 높음.

다만,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용이창작성 결여 사유로 거절될 수 있음. 우선 출원을 진행한 뒤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완·수정 대응을 권장함.

2. 이오나이저 특허

단순한 정전기 방출 구조가 아니라면 기술적 효과 중심으로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전위 제어 방식, 전원 구조 등 기술 차별성이 입증되면 특허 등록 가능성이 있음.

3. 종합의견

디자인과 특허를 병행 출원 시 제품의 외관과 기술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어 추후 유사제품 대응 시 법적 권리행사 폭이 넓어짐. 출원 전 도면 세부구성 및 기술요소 정리를 전문가 검토 후 제출 권장.

51

지역
광주

브랜드, 앱 디자인, 캐릭터 등 신규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 내용(요약)

신규 디자인 및 앱 캐릭터의 저작권 및 디자인 보호 전략 자문

○ 해당분야

상표 / 디자인 / 저작권 보호

○ 사례경과

A업체는 'OOO'라는 브랜드명으로 의로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상표는 제9류(소프트웨어 관련) 및 제44류(의로서비스 관련)로 각각 출원되어 일부는 등록, 일부는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됨.

또한 기업명에 대해서도 별도의 서비스표 등록이 필요함을 검토함.

○ 자문의견

'OOO' 앱 내에 구현된 기호, 도형, 아이콘 및 시각적 구성요소는 「디자인보호법」 상 화상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보호가 가능함.

다만 해당 화상이 단순 장식이 아니라,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 발휘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여야 등록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제작될 앱 홍보영상 및 캐릭터 디자인은 「저작권법」 제4조에 따른 영상저작물 및 미술저작물로 보호 가능하며,

창작자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면 분쟁 시 입증력이 강화됨.

상표 · 디자인 · 저작권 세 영역을 병행 관리하여, 브랜드 식별력 확보와 콘텐츠 무단 사용 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존 웹툰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새로운 2차 창작물을 제작·활용함에 따라, 해당 2차 창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 시 저작권 침해 여부 및 법적 보호 가능성과 SNS나 팬사이트 등에서의 비상업적 게시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내용(요약)

원저작물(웹툰)을 변형한 2차 창작물의 법적 지위 및 권리관계 자문

○ 해당분야

저작권 / 2차저작물 작성권

○ 사례경과

신청인은 원저작물의 캐릭터·세계관을 차용하여 일부 스토리 전개와 설정을 개작한 형태의 2차 창작물을 제작.

이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침해 가능성과 함께,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대한 독자적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자문의견

2차 창작물은 원저작물의 표현 요소(캐릭터, 세계관 등)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및 2차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과 동시에, 2차 창작물 자체에도 별도의 저작권(창작성 인정 시)이 발생함.

또한 2차 창작물이 원저작물의 캐릭터나 표현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와는 별도로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음.

비상업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트위터·SNS·팬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목적, 방식, 원저작물의 사용 비중, 시장 대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저작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면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상업적 이용뿐만 아니라 비상업적 2차 창작 활동 시에도 원저작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안전함.

저작물의 사용권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상 분쟁을 예방하고자, 방송사와의 사이에 저작권 사용 및 권리행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려 함. 이에 따라,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

○ 내용(요약)

방송 납품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저작권재산권 관련 합의서 작성 자문

○ 해당분야

저작권 / 계약법 / 콘텐츠 납품계약

○ 사례경과

A업체는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시 사용된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의 창작자이자 납품자임.

기존 납품 과정에서 사용된 계약서에는 저작권재산권 귀속 및 사용범위에 관한 조항이 불명확하여, 향후 저작물 사용 시 분쟁 가능성이 제기됨.

이에 기존 계약서 양식을 참조하여 신청인이 저작권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함.

○ 자문의견

새로 작성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신청인이 방송사에 납품한 저작물 (애니메이션 ·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을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다만, '저작권 귀속'이라는 표현은 수탁기관(방송사)의 승인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개발 · 제작 · 납품한 저작물에 대하여 포괄적 권리행사가 가능함을 명시"하는 문구로 조정함.

추후 방송사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

공공디자인 공모 탈락 제안서의 디자인 도용 의혹 및 행정기관의 저작권 인식 문제

○ 내용(요약)

공공디자인 공모 탈락 제안서의 디자인 도용 의혹 및 행정기관의 저작권 인식 문제

○ 해당분야

공공계약 / 디자인저작권

○ 사례경과

2024년 8월 제안서 접수 및 평가에서 2순위로 탈락.

2025년 6월, 현장에 당사 제안 디자인이 시공된 사실을 확인.

1순위로 선정된 디자인전문회사의 제안서에는 해당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지자체와 시공사가 신청인의 제안 디자인을 무단 활용한 정황이 확인됨.

지자체는 “공모요강에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사의 독자적 정보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업단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함.

○ 자문의견

1. 제안서 반환 불가 조항의 법적 의미

공모요강의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단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서류의 물리적 반환 불가 및 행정자로 활용권에 관한 내용일 뿐, 저작물의 창작권 또는 디자인저작권의 양도·이전을 의미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문구를 근거로 제안서의 디자인, 도면, 시각자료 등 창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음.

2. 저작권 침해 가능성

「저작권법」 제4조 및 제97조에 따라, 제안서에 포함된 조형·시각디자인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며, 공모 탈락 이후 무단 사용 또는 2차적 저작물 제작(시공)은 복제·전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공공기관이 발주자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취득은 명시적 계약 또는 양도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함.

3. 대응방안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저작권법 제125조).

공공기관 대상 민원제기 및 감사요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계약 관련 부당처분) 검토. 향후 공모 참여 시, 제안서 표지 및 서두에 ‘저작권 보호 문구’(예: “본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의 창작물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음”)를 삽입하여 권리보호 강화 권장.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kidp

계약 및 디자인 용역비 관련



해외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정산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판단

○ 내용(요약)

계약해지 가능여부

○ 해당분야

계약

○ 사례경과

A업체는 작년에 홍콩의 업체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내용에는 홍콩 업체가 매월 정산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주고, 그에 따른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신청인은 위 홍콩 업체로부터 지금까지 정산서도, 정산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여서, 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계약상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자문의견

계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해당 당사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 줄 것으로 요청할 수 있고, 2개월이 지나도 해당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우선 홍콩 업체에게 서면으로 계약상 의무를 2개월 내로 이행하라고 통지하고, 2개월 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라고 조언함.

02

지역
대구

직접 대면을 통한 인감도장 날인이 아닌 비대면 스캔받은 파일 인감도장 사용시 법적 문제 여부

○ 내용(요약)

비대면 스캔인감 사용

○ 해당분야

계약

○ 사례경과

지원사업 진행 시 수혜(수요)기업, 수행(공급기업), 관리기관 간 협약 시 협약서에 직접 대면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스캔받은 인감으로 협약체결 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

○ 자문의견

협약의 당사자들이 협약서에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스캔하여 상대방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의 진위여부에 관하여 차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 날인을 하여 원본을 우편 등으로 받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나, 부득이할 경우 인터넷 상 전자서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됨.

해외 세관 통관 시 반출 불가 조치가 되었는데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고 싶고 관련하여 내용증명서 작성이 가능한지

○ 해당분야

세관 통관 관련 내용증명 작성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전시 작품과 관련하여 대만 세관 통관 과정에서 반복적인 소명 요구 끝에 최종적으로 '반출 불가'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러한 대만 세관의 조치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과 표준 서류를 갖추어 항공 발송까지 정상적으로 이행한 국내 배송업체가 대만 세관의 '반출 불허'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 자문의견

모든 국가는 주권에 따라 자국의 관세법 등을 적용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전시 목적의 물품에 대하여 추가 소명을 요구한 것은 재량권에 속한다고 판단되며, 해당 물품의 반출이 통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반출을 불허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세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을 하여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 이미 전시기간이 지났다는 점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용한 법적 수단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연함. 또한 국내 배송업체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운송업체가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없고, 세관의 통관 지연 및 반출 불허는 해당 업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 등 해당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특별히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통관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확인됨.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 상세페이지 제작 계약 해제 및 금액 반환 요구

○ 내용(요약)

계약 해제 사유의 타당성 및 내용증명 회신 여부 검토

○ 해당분야

계약, 민사, 콘텐츠제작

○ 사례경과

2025년 초, 화장품 개발 및 판매 업체와 온라인 판매용 상세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함. 이후 상대방 요청에 따라 기획, 촬영, 디자인을 포함한 변경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별도의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임.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망에 의한 계약 해제' 및 '작업 지연에 따른 해약'을 주장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 전액의 반환과 변호사 비용 부담까지 요구하고 있음.

이에 상대방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또한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회신용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지, 보낸다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

○ 자문의견

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아 양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음. 특히, 계약의 이행 시기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

상대방이 주장하는 '직장 여부를 숨겼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 의뢰자에게 직장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의 일의 완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됨.

계약서상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통상 일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고 그때까지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행 지체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나, 이 사건에서는 정해진 이행 시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의뢰자에게 이행을 청구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나 이행 지체에 따른 계약 해제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여 설령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면 되며 의뢰자가 문제된 금액 중 일부를 먼저 반환할 필요는 없고,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굳이 반박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음.

05

지역
대전·세종·충청

계약 체결 전 업무를 진행한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의 지연·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내용(요약)

계약 전 업무 착수 리스크 및 민원 제기 타당성 검토

○ 해당분야

디자인용역, 공공기관계약, 민원

○ 사례경과

지역 시립미술관 오픈 및 전시 홍보물 디자인 작업을 수행중임. 과업 범위에는 메인 포스터, 초청장, 리플렛, 옥외광고물, 온라인 홍보 이미지, 전시관 캡션, 도록 등이 포함됨.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계약 절차 지연, 필수 자료 제공 지연, 일정 관리 및 공유 부재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

- 1) 계약서 없이 업무를 진행한 상황에서,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업무 요청 및 일정 변경에 대해 작업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2) 본 건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를 고려중인데, 해당 절차가 현 상황에서 타당한 대응 방식인지, 민원 제기로 인한 불이익 발생 가능성과 구체적 위험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자문의견

의뢰자와 현재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서 작성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함. 이 건에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임.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존의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로 보아야 함. 따라서, 기존의 계약관계를 충실히 반영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상대방의 업무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려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으나, 법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음. 그보다는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계약에 따라 관계를 원만히 이행하여 증결하는 것이 중요함.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제기 여부는 법률적 문제라기보다는 행정적 선택의 문제로,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음. 다만 이는 당사자 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공모전 입상 후, 발주처에서 시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추가 업무와 저작권 관련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의 대응

○내용(요약)

공모전 입상 설계물의 저작권 및 권리보호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사례경과

A업체는 공동 디자인 설계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 이후 발주처에서 입상 시 지급되는 시상금의 대가로 제출안에 대한 설계 수정·보완 및 공사용 설계 시 협력하여야 한다는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저작권 양도와 관련하여서도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임. 현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문의함.

○자문의견

기본적인 추가 업무는 공모 관련 공지사항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상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해석을 통해 보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큰 틀에서 보면, 추후 업무의 경우 공모 제출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문 정도는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설명이나 자문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품이나 시간이 소요되거나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업계 평균 수준의 대가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저작재산권의 경우, 공모의 취지를 고려하여 저작재산권의 일부 양도인지, 아니면 저작물 이용 허락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함. 그 판단이 어렵다면 원칙적으로 저작물 이용 허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출품자(응모자)에게 유리하나, 경우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일부 양도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본 사안은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협의의 경과에 따라 유연하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전시용 그래픽 및 리플릿 디자인 용역 대부분을 완료하였으나 고객사의 자료 지연으로 일부 작업이 아직 미완료 상태이며 계약 기한 내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와 잔금 정산 권리,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 중인데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

○ 내용(요약)

계약 미이행에 대한 대응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고객사인 B업체와 2025년 초까지 전시용 그래픽 및 리플릿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함. 계약에 따라 제작물을 지체 없이 수행했으나, 고객사인 B업체는 내부 사정으로 자료 제공과 피드백 회신을 늦게 하여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고 있음. 현재 디자인 용역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일부 작업은 자료 미제공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이메일과 메시지를 통해 4월 중순까지 작업 수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이후에는 추가 업무 수행이 어려움을 통보함. 현재 프로젝트 진행 방식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안내한 기한 내 납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남은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용역비는 일부가 이미 지급되었으며, 잔금은 모든 산출물의 납품과 검수 완료 시 지급될 예정임. 계약을 종료할 경우 B업체가 A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와, A업체가 이미 수행한 작업에 대해 B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정산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자문의견

통상적으로 용역계약은 용역의 내용(범위), 수행 기간, 용역대금이 핵심 구성요소임. 본 사례와 같이 계약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고객사의 사정으로 일부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때 고객사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와, 수행자가 고객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됨. 우선 수행자는 고객사의 사정으로 일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경과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행자가 용역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남은 용역을 모두 수행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쉽게 설명하면, 남은 용역 수행에 투입되었을 비용을 잔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임.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손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즉,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것임. 계약기간 내 용역 수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 수행자의 잘못이 아니고, 오로지 고객사의 사정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수행자가 고객사에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음. 고객사가 수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분쟁이 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고객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클라이언트의 반복적인 일정 지연, 계약 범위를 초과한 요구, 신뢰 훼손 등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

○ 내용(요약)

일정 지연과 계약 범위 초과 요구로 인한 계약 해제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클라이언트와 진행한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협력사로 참여하였으며, 협의된 일정과 업무 범위에 따라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해옴. 그러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측은 문서나 메일 기반의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고 대면 미팅만을 고집함으로써 전체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됨. 내부 사정을 이유로 미팅이 여러 차례 연기되고, 피드백도 적시에 제공되지 않아 프로젝트 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함. 또한, 디자인 시안이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에도 클라이언트 측은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반복적 업무를 요청하였고, A업체는 일부 요청을 수용하면서도 해당 업무가 계약 범위 외임을 지속적으로 고지함. 그럼에도 클라이언트는 계속해서 계약 외 업무를 요구하며 프로젝트 진행을 방해함. 이에 A업체는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클라이언트는 대면 미팅을 통해 해지 철회 및 협업 재개를 제안하며 일정 지연에 대한 자신의 과실도 인정함. 그러나 이후 확인 결과, 클라이언트가 A업체 부재중 타 협력사에게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책임을 전가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협업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약 해지를 최종 통보할 예정임.

○ 자문의견

본 계약은 성립 후 당사자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음. 정당한 사유에는 계약서상 명시된 약정 해제 사유와 민법상 채무불이행 등 법정 해제 사유가 포함됨.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의무를 요구할 수 없으며, 초과 요구 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함.

본 건의 경우, 클라이언트(갑)는 지속적인 일정 지연,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업무 요구, 신뢰 훼손 행위 등을 반복하였으므로, 이는 계약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해제 사유에 해당함.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나, 절차적 안전을 위해 이행 최고 후 14일 경과 시점에 해제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클라이언트의 반복적인 일정 지연, 계약 범위를 초과한 요구, 신뢰 훼손 등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

○ 자문의견

또한, 클라이언트가 계약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브랜드 기획 등 추가 용역을 요구한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법정해제 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음.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이행된 부분은 유효하게 남으며, 클라이언트는 그 이행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이를 기준으로 잔여 용역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액은 남은 용역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서 이행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됨. 해제 통보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통지 시에는 계약 내용, 위반 사실, 해제 사유, 용역 이행 내역, 청구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클라이언트가 대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용역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가 손해배상이나 결과물 반환 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나, 계약 위반의 근본적 책임이 클라이언트에게 있음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시안, 이메일, 문자, 회의록, 내용증명 등)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방어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09

지역
부산

당사가 개발한 제품을 중국 OEM 공장을 통해 제작하려 하며 금형제작 및 디자인 적용 제품의 소유권, 제조·수입 계약서 상 권리 관계, OEM 책임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 해당분야

계약 문구 법적 효력 문의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OEM 생산 시 금형의 소유권 및 반출 권리에 대한 계약 문구의 법적 효력과 중국 제조사와의 계약 시 디자인권 및 상표권 침해 방지 조항에 자문을 구하고자 함.

○ 자문의견

금형의 소유권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단순히 금형 제작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당연히 발주사에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계약서에 "금형의 소유권은 발주자인 △△사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더 나아가, 소유권 귀속 조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중국 현지 공장이 계약 종료 후에도 금형 반환을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

금형 반출 조건 : 계약 기간 만료, 해지 등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발주사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그리고 조건 없이 금형을 반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제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형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규정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임.

제3자 사용 금지 : 해당 금형은 오직 △△사의 제품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조사가 임의로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함.

10

지역
부산

보증보험을 받지 않고 용역비용을 지불하였더니, 공사가 약속한 만큼 진행되지 않아 지급한 용역비를 보전할 방법이 궁금함

○ 내용(요약)

용역 관련 분쟁

○ 해당분야

용역비 및 계약

○ 사례경과

A업체는 보증보험을 받지 않고 용역비용의 대부분을 지급을 하였고, 공사 진행이 10% 밖에 진행이 되지 않아 난감한 일이 발생 되었음. 이런 경우 경찰 신고 외에 지급한 용역비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함.

○ 자문의견

1. 용역계약 해지와 원상회복 청구

계약 해지의 근거 : 용역 계약에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공사 진행률이 10%에 불과한데 용역비의 70%를 지급받은 것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해지 후 원상회복 청구 : 용역계약 해지 시 이미 지급한 용역비 중 미이행 부분에 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계약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미 이행된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 60%에 대한 용역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2. 법적 조치 방안

민사소송 제기 : 계약 해지 통보 후 부당이득반환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소송을 통해 지급한 용역비 중 미이행 부분에 대한 반환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청구 가능함.

가압류 신청 : 소송과 함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추후 판결 집행을 위한 재산을 확보할 수 있음.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3. 기성고 확인 및 정산

현재까지의 공사 진행 상황(10%)에 대한 객관적인 기성고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음. 기성고에 비해 과다 지급된 용역비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

공사 계속 진행 시 조치 :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한다면, 남은 용역비는 공사 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실내 리모델링 설계용역 입찰 시 '건축사사무소 업종 등록'만을 요건으로 한 제한의 타당성 검토였으며, 이로 인해 영업기회 및 매출 손실이 발생함

○ 내용(요약)

실내 리모델링 설계용역 입찰 시 '건축사사무소 업종 등록'만을 요건으로 한 제한의 타당성 검토 및 제도 개선 자문

○ 해당분야

공공계약 / 입찰참여 제한 관련 법률 검토

○ 사례경과

A업체는 실내건축공사업 및 산업디자인(환경)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관내 기관으로부터 실내 리모델링 설계용역 제안을 받고 현장 답사를 실시함.

구조 변경이 없는 인테리어 개선 중심의 설계임을 확인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사사무소 업종 등록 업체만 계약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입찰 참여가 불가하게 됨.

과거 동일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수행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번에는 업종제한으로 참여기회를 상실하여 이에 대한 법적·행정적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자문 요청함.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고지 기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주요 건축 설계는 건축사 자격이 필요하나, 비구조적·비외장적 실내 인테리어 설계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전문분야: 환경) 등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음.

또한 조달청·나라장터의 계약 운영지침에서도 설계용역 참여 자격은 '관련 자격 및 경험 종합판단'에 따른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건축사사무소 업종 등록"을 절대 요건으로 명시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이에 산업디자인(환경) 자격 보유 업체도 실내 리모델링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함.

○ 자문의견

신청인의 면허 범위와 공사 성격에 비추어볼 때, 본 건은 구조물 변경이나 건축물 외장 설계가 수반되지 않는 비구조적 인테리어 설계용역으로 판단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사사무소 업종 등록 업체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입찰참여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다소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보임.

관련 법령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지침(조달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은 해당 용역의 성격·규모·전문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11

지역
광주

KEYWORD 입찰참가자격 / 건축사사무소 요건 / 산업디자인 설계용역

실내 리모델링 설계용역 입찰 시 '건축사사무소 업종 등록'만을 요건으로 한 제한의 타당성 검토였으며, 이로 인해 영업기회 및 매출 손실이 발생함

○ 자문의견

만약 해당 기관의 제한이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차별적 제한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할 수 있음.

- 1)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 2) 민사소송(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3) 행정소송(부당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청구)

다만, 입찰참가자격은 행정기관의 재량 판단 범위가 넓게 인정되므로, 실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단건의 분쟁 대응보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분야) 등 관련 업종 단체를 중심으로 정책 개선 건의 및 제도 정비를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보다 실효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임.

일러스트 용역 납품 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관련 자문

○ 내용(요약)

일러스트 용역 납품 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관련 자문

○ 해당분야

계약 / 용역대금 미지급

○ 사례경과

2024년 12월, A업체(1인 일러스트레이터)는 두 번째 거래 기업과 일러스트 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완료함.

납품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용역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연락하였으나, 담당자가 퇴사했다는 안내만 받음.

이후 회사 측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전화·이메일 모두 응답 없음.

현재도 회사 홈페이지는 정상 운영 중이며, 노동청이나 법원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임.

○ 자문의견

본 건은 용역대금 미지급에 해당하며, 민사상 채권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 신청이 적절한 해결 절차를 안내함.

신청인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만약 송달 후에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설명함.

신청인은 계약에 상법이 적용되므로, 용역대금 지급기일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함.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회사 주소지가 확인된다면 법원 송달이 가능하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한 민사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함.

브랜딩 작업을 진행하기로 구두로 합의 후 작업을 완료했으나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현재는 전화·카카오톡·문자 모두 연락 두절 상태로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며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주소지 등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서 작성 및 민사청구가 가능한지

○내용(요약)

브랜딩 용역 잔금 미지급 및 상대방 인적사항 미확인 상황에서의 민사소송 진행 가능 여부 자문

○해당분야

계약 / 용역대금 미지급

○사례경과

A업체는 브랜딩 용역(총액 275만 원)에 대해 구두로 계약 후 선금 125만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잔금 125만 원은 납품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합의함.

계약서 원본은 발송했으나, 상대방 서명 회신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완료함.

2025년 3월 20일 작업을 마친 이후에도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상대방은 일정만 미루다가 이후 전화·카톡·문자 모두 불통 상태가 됨.

사업자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명령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

○자문의견

신청인은 거래처로부터 미지급 잔금 125만 원을 청구해야 하나, 상대방의 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임.

이 경우에도 통신 3사, 과세관청 등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음.

다만, 지급명령 절차는 상대방 주소 확인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본 건의 경우 지급명령보다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가 적절하다는 의견임.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반복적으로 요청한 문자 및 통화 내용은 채권 청구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함.

신청인이 희망하는 소액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심화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용역 90% 수행 후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 내용(요약)

클라이언트 측 변심으로 인한 잔금 지급 거절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 사례경과

고객사와 계약 체결 후, 계약금으로 총 용역대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절차에 따라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해 왔음. 현재 용역의 90%를 완료한 상태에서 고객사가 변심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함.

○ 자문의견

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서나 법령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지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짐. 용역을 90% 수행한 상태에서 고객사가 잔금 지급을 거부하면 이는 고객사의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수행자(귀사)는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고객사의 일방적 잔금 거부로 더 이상의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 확정과 청구방법이 문제 될 뿐임.

우선 고객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람. 고객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잔금 청구 판결을 받은 후, 판결에 따라 고객사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용역대금을 회수할 수 있음.

용역 완료 후 상당 기일이 지났음에도 내부사정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 방법

○내용(요약)

디자인 용역 완료 후 잔금 미지급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사례경과

디자인 용역 계약 체결 후 계약서상 정해진 기간 내 완료되기로 한 프로젝트가 지연되어 실제 완료 시점이 늦어졌으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잔금은 수개월간 지급되지 않았음. 잔금 청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상부 결재 지연을 이유로 지급이 여러 차례 미뤄졌고, 이후 담당자는 원청과의 거래 정산 문제로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기존 세금계산서의 취소를 요청함. 반복적인 지연으로 인한 적절한 대응 방법과 재연락 시 내용증명 발송 시점 등에 대해 문의드림.

○자문의견

상부 결재 지연이나 원청과의 거래금 미정산 등의 사정은 잔금 지급 지연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금 연체가 3개월 정도 발생하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더 강하게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선 잔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음. 지연이 길어질수록 권리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고, 정신적·신체적 부담이나 현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점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권장드림. 거래 상대방의 재무 상태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잔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상대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잔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을 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

○ 내용(요약)

잔금 미회수 시 회생 채권 신고 방법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사례경과

2024년 11월, 특정 회사와 대금 1천만 원 규모의 자동선별기 제품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대금을 제외한 잔금 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5년 2월 디자인을 완료함. 그러나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해당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함. 확인 결과 본인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본인은 회생 절차에서 남은 용역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음.

○ 자문의견

채무자는 회생 절차를 개시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함. 그러나 본인의 채권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 내에 별도로 회생 채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신고 대상인 채권은 회생 채권에 해당하며,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회생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됨.

채권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뉨. 첫째,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포털에 사용자 등록 후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인증 절차를 거쳐 회생 채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만, 현재 채권자는 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먼저 재판부에 연락하여 신고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함. 둘째, 우편 제출 방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발송할 수 있음. 셋째, 직접 법원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접수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 경우 작성한 신고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됨.

17

지역
강원

인테리어 도면 작업 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함

○ 내용(요약)

구두 계약 시 용역비 청구

○ 해당분야

공간디자인

○ 사례경과

A업체는 인테리어 업체의 요청으로 약 15곳(자문서 기준 10곳)의 현장에서 시안 디자인, 도면 작업, 검수 업무 등을 수행함. 인테리어 업체 측과 별도 서면계약 없이 구두로 '통상적 금액 지급' 약속 후 작업을 완료했으나, 현재까지 용역비를 받지 못한 상태임. 이에 따라, 용역비 청구가 가능한지, 작업 결과물(도면·시공 사진 등)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림.

○ 자문의견

1. 용역비 청구 가능성

본 사안은 서면 계약이 부재하더라도, 구두계약 및 실제 용역 수행 사실을 입증할 자료(대화내역, 작업파일, 납품 이메일 등)가 존재한다면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A업체가 업무 내용과 금액 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용역비 청구가 가능함.

다만, A업체는 과거 유사 자문에서 "입증은 가능하나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2. 작업 결과물의 포트폴리오 활용 여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결과물(도면 등)은 도급인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됨. 다만, 시공 후 촬영된 사진 등은 신청인이 직접 촬영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 시, 초상권·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 동의 또는 비식별화 후 활용을 권장드림.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kidp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01

지역
대전·세종·충청

신규 브랜드 로고 디자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 내용(요약)

로고와 디자인 요소의 폰트 저작권 및 디자인권

○ 해당분야

시각디자인, 브랜드아이덴티티

○ 사례경과

신규 로고작업을 포함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리플렛, 패키지)을 진행 중임.

로고디자인의 지식재산권(폰트, 저작권, 권리 귀속,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부분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함.

○ 자문의견

상표 도안과 지정상품 제35류(도소매·광고업), 제43류(음식점·카페·숙박업)에 대한 상표등록가능성을 살펴보면, 해당 단어는 성질표시표장이 아니라 조어에 해당하므로 선출원 상표의 존재 여부가 관건임.

다만 제43류와 관련하여 이미 선출원 상표가 존재하므로, 상표 등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제35류의 경우에도, 커피 소매업 등 유사한 지정상품을 선택할 경우 앞서 언급한 제43류의 선출원상 표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마찬가지로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선출원 상표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대이므로 해당 상표가 거절될 가능성도 존재함.

그러나 설령 선출원 상표가 거절되어 선출원 자격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동일한 거절이유가 신청인의 상표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등록가능성은 여전히 낮을 것으로 판단됨.

이미지 라이선스를 구매해 고객사에 제공했지만, 라이선스 업체가 고객사를 대기업으로 분류하며 라이선스 업그레이드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처 방안

○ 내용(요약)

라이선스 관련 분쟁 사례

○ 해당분야

이미지 라이선스

○ 사례경과

A업체는 이미지 사이트에서 일반 기업형 특약 라이선스(대기업 제외)를 유료로 구매하여 고객사에 납품용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당사가 이미지를 납품한 고객사가 포털사이트 기준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사이트에서 임의로 해당 고객사를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라이선스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상황임.

A업체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 대기업 라이선스로 업그레이드하려 했으나, 일부 업종은 여전히 대기업 라이선스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추가 결제를 요구받는 문제도 발생함. 회사 사정상 고액의 추가 비용 부담이 어려운 가운데, 단순 업그레이드만 진행해도 반복적인 추가 결제 요구가 예상됨.

이에 A업체는 추가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

○ 자문의견

이미지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비스 대상 분류와 대상별 라이선스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체의 재량에 속하며, 다른 법령이나 외부 분류를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음.

소비자는 가격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구매를 보류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 방식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각 라이선스의 사용범위, 제한, 위반 시 제재 등이 약관으로 제공되고, 결제 시점부터 약관에 따른 계약이 성립하여 약관에 구속된다는 것임.

또한, 업체가 일부 분야에 대해 '별도 협의'로 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정해진 가격이 없으며, 협의를 통해 조건을 정해야 하므로 별도의 합의를 거쳐야 함. 결제한 일반 기업형 라이선스의 사용범위는 결제 시 확정되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다만, 위반에 대해 업체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려면 그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며(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한), 만약 결제를 거부할 경우 업체가 귀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명을 바탕으로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해 적정 손해액을 결정하게 됨.

공방 간판에 사용된 폰트로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저작권 안내문'이 왔을 경우 대응 방안

○ 내용(요약)

폰트 저작권 침해 경고장 대응

○ 해당분야

지식재산권 침해

○ 사례경과

A업체의 공방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체험하고 간 손님이 올린 사진으로, 폰트 라이선스 사용권 계약 보유 증명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함.

○ 자문의견

유료폰트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디자인권과 저작권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데, 디자인권이 등록된 폰트 프로그램의 경우 폰트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사안과 같이 폰트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디자인권 침해에는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되려면, 원저작자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하고, 또한 저작권의 모방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원저작권과 침해저작권 간의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그리고, 폰트업체 측에서 디자인권 침해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직접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본 멘티가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바라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디자인권 침해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적극적인 회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회신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음.

그리고 디자인권(폰트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진행하고, 일정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디자인등록 즉, 디자인권이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창작물을 창작한 때 바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만큼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태생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림.

클라이언트가 웹에 공개한 파일로 '정품폰트 프로그램 및 PDF 게시 사용권 증서 보유 확인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을 받음. 인쇄 라이선스는 보유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부분은 서비스로 제공한 전자파일 송부 건임. 어떻게 대응할지?

○ 내용(요약)

폰트 저작권 침해 대응

○ 해당분야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A업체는 기관과의 거래관계를 통해서 디자인용역을 완료하였고, 최근에 서체 지적재산권 팀에서 "정품폰트 프로그램 및 PDF 게시 사용권 증서 보유 확인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우편을 수령함.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말씀드림.

○ 자문의견

우선 폰트는 창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판례는 "폰트는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하여 폰트 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으나(대법원94누5632판결), 폰트파일의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입장임(대법원99다23246판결).

따라서, 업체에서 ○○폰트에 대해서 폰트 파일 또는 폰트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서 등록을 받을 수는 있어서 ○○폰트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발생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A업체의 기관에서 용역을 주신 디자인에 대해서는 단지 기관 측으로부터 받은 한글파일을 이용해서 디자인용역을 완료하여 인쇄 및 제본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폰트파일(○○폰트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아 보이므로 사건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드림.

추가적으로 폰트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은 아니지만, 폰트 자체를 디자인출원 및 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디자인권에 대한 문제 발생 여지는 없는지도 추후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폰트파일을 다운받은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만약 폰트 자체에 대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폰트 자체의 사용은 디자인권의 침해 발생 여지는 있기 때문임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임.

우선은, 서체 업체에서 A업체 측으로 서신을 보낸 게 아니라 기관측으로 서신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당장 A업체가 서체 업체 측에 별도의 회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며, 기관측에서 A업체에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만약 물어 보신다면, 폰트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될 듯 함.

05

지역
광주

저작권 등 침해 관련 소송 대응

○ 내용(요약)

디자인 소스 온라인 판매처 저작물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및 항소 대응 관련 자문

○ 해당분야

저작권 / 디자인권 침해 분쟁 대응

○ 사례경과

1. 경과

A업체는 쌀 포장 디자인을 대행하면서 캐릭터 이미지를 'OOOOOOO'에서 받아 사용함. 해당 캐릭터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디자인 도용 및 저작권 침해로 500만 원 합의금 지급 요구를 받음.

이에 기존에 저작권협회에 등록했던 디자인과 이미지를 모두 폐기/삭제하고 새롭게 등록하였으나, 법무법인 측이 디자인 이의제기기간(3개월) 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형사 고소 건은 '협의 없음'(무혐의)으로 종결되었으나, 이후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결과 1심에서 150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짐.

그런데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항소 대응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기 어렵다는 사정으로 자문을 요청함.

2. 소송현황

2024. 6. 20. 1심 법원에서 A업체가 원고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됨.

상대방이 항소장을 제출, 이후 2024. 7. 30.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4. 8. 5. A업체에게 해당 서류가 송달됨.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앞서 2025. 6. 23. 자문을 신청함.

A업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항소 대응 변호사 선임이 불가한 상황에서, 적절한 절차 대응 및 변론 준비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

05

지역
광주

저작권 등 침해 관련 소송 대응

○ 자문의견

1. 현재 상황의 시급성

항소심 첫 변론기일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하여, 새로운 법률 검토를 진행하기에는 물리적 여건이 부족함.

따라서 A업체에게는 ① 1심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②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속행(기일 연기)'을 신청하여 대응 시간을 확보하도록 권고함.

2. 항소 대응 시 유의사항

항소는 원심판결의 법리적·사실적 판단을 다시 다루는 절차이므로, 1심 판결문, 증거자료, 저작물 사용 근거(OO00000 이용약관 등)를 재정리하여, 저작권 침해의 고의·중과실 부존재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1심 판결에서 이미 일부 금액이 인정된 점, 손해액의 규모가 경미한 점, 형사 무혐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에 조정(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회부)을 요청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임.

3. 추가 권고사항

신청인이 변호사를 재선임하기 어렵다면, 법원 민사과 내 '소액사건 상담제도'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항소심 법률구조를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안내함.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kidp

노무 및 회계 관련



01

지역
대전·세종·충청

직원 업무 과실 및 퇴사 관련 손해배상, 교육 과정 운영의 법적 책임

○ 내용(요약)

직원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채용 전 교육 운영의 적법성 검토

○ 해당분야

노무

○ 사례경과

말할 수 없는 병으로 인해 당일 퇴사한 직원으로 인해 발생한 외주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직원의 반복적인 파일 전송 실수로 외부 인쇄 업체에서 손실분에 대한 청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디자이너의 업무역량이 향상되지 않아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 취득을 권유하였으나, 직원이 이를 갑질로 주장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당일퇴사한 상황에서 자격증 취득 권유가 불법인지.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정규직 채용 전 약 3주간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하고자 할 때, 교육 기간 동안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식비와 일부 수당만 약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자문의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함.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파일 전송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자격증 취득권유는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음.

교육이 직무수행을 빙자한 것이 아니라면, 교육에 대해 일정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공고 및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02

지역
대전·세종·충청

사내 인사제도 정비 시 근로계약서와 노사협의회 설치는 어떻게 검토해야 할지

○ 내용(요약)

기업 내부 인사·노무 체계 정비

○ 해당분야

노무, 인사관리, 근로계약, 노사협의회

○ 사례경과

현재 사내 인사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체계 점검과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자문이 필요한 상황.

근로계약서 관련

- 1) 현재 모든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이 현행 법령과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특히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기준에 적합한지, 법적 분쟁 발생 시 문제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
- 2) 또한, 촉탁계약직 계약서의 경우 추가로 포함해야 할 문구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하고자 함.

노사협의회 관련

- 1)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 하지만 구성 요건, 위원 선출 절차, 회의 주기 및 회의록 작성 등 실무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아직 설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노사협의회 설립 절차 및 운영상의 유의사항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요청함.

○ 자문의견

근로계약서 관련

- 1) 고정 OT가 없다면 문제가 없으나, 고정 OT가 발생할 경우 현 계약서로 문제가 예상됨.
- 2) 임금 항목별로 세분화 작업이 필요함.

노사협의회 관련 : '22년 개정 사항 모두 반영되어 있음. 현행을 유지하되, 3개월마다 협의회 개최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취업규칙 관련 : '25년 4월 개정된 사항으로 문제 없음.

03

지역
대전·세종·충청

지원받은 사업비 정산 시 증빙서류와 부가가치세 처리

○ 내용(요약)

사업비 정산 증빙서류 구비 및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 검토

○ 해당분야

회계, 세무, 사업비정산

○ 사례경과

공기업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음. 사업비 사용과 정산 과정에서 항목별 증빙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규정된 양식이 아닌 자체 양식으로 작성하라는 안내를 받아, 인건비·전문가자문비·여비교통비의 증빙자료 적정성에 대해 검토를 요청드림.

또한, 부가가치세 지출 처리 기준에 대해 문의드림. 외주제작비, 출원비, 회계감사 수수료 등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항목은 문제없으나, 인건비·전문가활용비·국내여비·회의비·장작료 등 직접비 성격의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세 산정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음. 협약 예산의 항목별 비용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또는 별도의 세무 처리 절차가 필요한지 자문을 요청함.

○ 자문의견

사업비 증빙자료의 검토

- 1) 인건비 : 급여대장, 송금증(인건비가 여러 사업에서 지출된 경우 모든 송금증 제출)
- 2) 전문가자문비 : 제출한 서류에는 10회차가 일시에 기재됨. 일자별로 자문일자 작성·첨부하고, 전문가 이력서 및 통장사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함. 해당 자문은 회차당 10회로 총 1,000,000원이며, 단일 자문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 시 3.3%의 원청징수가 필요함.
- 3) 여비교통비 :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 :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으로, 사업비 집행행역에서 제외되어야 함. 따라서 외주제작비, 재료비 등 세금계산서 발행 건에 대해서는 사업비 통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만 입금하고, 부가가치세는 회사 운영비 통장에서 입금하여야 함. 다만,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제되므로, 해당 부가가치세 금액만큼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해야 함.

04

지역
대전·세종·충청

부모님 명의의 주식을 이전하려고 할 때 세금과 법적 절차

○ 내용(요약)

주식 명의신탁 및 이전

○ 해당분야

세무 및 상속

○ 사례경과

A업체는 2002년 당시 1인 회사 설립이 불가하여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부모님을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여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주식을 배분하여 자본금을 설정하고 회사를 설립함. 이후 23년이 지나, 현재 대표이사 명의로 가족 명의의 주식으로 이전하여 1인 회사로 전환하고자 함. 이러한 경우 과거 형식적으로 주식이 배분된 점을 고려하여 주식 평가 및 이전 절차를 어떻게 정리하고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림.

○ 자문의견

부모님 명의의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이전하는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 다만 세무적으로는 증여세 등이 고려될 수 있음. 설립 당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주식이었으나 부모님 명의로 맡겨진 경우, 이는 명의신탁으로 간주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음. 또한 부모님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가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해야 할 가능성도 있음. 다만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한 상태라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명의신탁임을 현재 시점에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님 명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매매 또는 증여에 해당되며,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매매로 간주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증여로 간주될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게 됨.

원격근무(국내/외)를 포함한 근무 시, 근로조건을 법적 리스크 없이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내용(요약)

해외 원격 근무 시 노무 관리

○ 해당분야

노무

○ 사례경과

제품디자인 외주와 IoT R&D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A업체는 업종 특성에 맞춰 인사 평가, 연봉 인상, 원격근무, 시간 외 수당 제도를 법적 리스크 없이 제도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내규나 근로계약서 샘플, 유사 사례 확인을 요청함. 원격근무와 관련해서는 근태관리(시차출근, 선택적 근로시간, 유연근무 적용 가능성 및 52시간제 준수 방안), 보안·비밀유지(원격 근무지에서의 정보 보안), 근무지 범위(국외 체류 시 4대보험·산재·체류 자격·소득세 원천징수 등 법적 리스크 및 허용 정책) 등을 점검하고자 하며, 특히 해외 장기 체류 시 건강보험 납부 정지 문제도 고려 대상임. 또한 연봉 인상과 관련해 정규직 및 계약직(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의 적정 인상률과 노무 계약 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 자문의견

원격근무 근태관리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국가와 근로계약상 명시적·묵시적 준거법에 따라 주 52시간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한시적 파견의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보안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근무지 범위는 근로자의 체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피보험자가 없으면 100%, 피보험자가 있으면 50% 면제되며, 사후 신고를 통해 정상하게 됨.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현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산재보험은 상실 처리되고 고용보험은 현지 지급 시 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됨. 연봉 인상률은 기업마다 편차가 크며,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소폭 인상하는 사례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람.

직원이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병가를 사용함.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문의

○ 내용(요약)

징계해고

○ 해당분야

노무

○ 사례경과

소속 직원이 병가를 신청하였고, 확인을 위해 진료확인서 제출을 요청함.

규모가 큰 병원임에도 양식 등이 이상하여 담당 의사가 존재하는지 확인함.

확인 결과 진료확인서상 담당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마침 회사 대표이사가 해당 병원에 진료 이력이 있어 동일하게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양식을 대조해 봄.

확인 결과 해당 진료확인서 양식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조치 방안을 고민 중인 상황.

○ 자문의견

직원이 제출한 진료확인서와 대표이사가 발급받은 진료확인서를 대조한 결과 그 양식이 완전히 달랐고, 직원이 진료확인서를 위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해당 업체의 경우 해고 시 고용지원금 등 수급 문제상 이슈가 있을 수 있고, 해고 절차상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즉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1차적으로 해당 직원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이후 해고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직원 본인이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도록 안내함.

추가 확인 결과 직원 당사자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본인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함.

퇴직한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종료 사유 변경을 요청하면서, 본인이 해고 혹은 권고사직임을 증거로 남기려고 시도하였음, 답변은 하되 원칙대로 본인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직원 사정에 따라 허위신고 할 수 없음을 안내하도록 함.

07

지역
광주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직원 휴식·휴일 운영, 근태 불량자 관리 등 사업주 유의사항

○ 내용(요약)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직원 휴식·휴일 운영, 근태 불량자 관리 등 사업주 유의사항

○ 해당분야

근로기준 / 인사노무관리

○ 사례경과

최근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소규모 사업주들이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관리 방식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임금체계 개선 시 유의사항, 휴게·휴일 제도 운영 시 필수 점검사항, 근태 불량자 관리 절차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요청함.

○ 자문의견

1. 포괄임금제 폐지 및 임금체계 개선 시 주의점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예상하여 미리 급여에 포함시키는 임금지급 방식임.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폐지되는 경우 근로시간 관리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산정이 필수적임.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연장, 야간, 휴일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통상임금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산정·지급해야 함.

2. 직원 휴식 및 휴일 운영 시 유의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회 이상 부여해야 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직원 휴식·휴일 운영, 근태 불량자 관리 등 사업주 유의사항

○ 자문의견

3. 근태 불량 직원(지각·결근 등) 관리 및 주의점

근로태도 불량자는 출퇴근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이며, 단순한 구두경고에 그치지 말고 서면경고·경위서 제출 등 문서화 절차를 병행해야 함.

위반 정도에 따라 구두주의 → 서면경고 → 징계절차 착수(감봉, 견책, 정직 등)의 단계별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

징계는 반드시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부당징계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보호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인사조치 전 사전 경고 및 소명기회 제공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중요.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체계를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을 감액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요청

○ 내용(요약)

주 4.5일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감액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 해당분야

근로계약 / 임금조정 / 근로자 동의

○ 사례경과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근무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나, 이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감액할 필요가 생긴 상황.

임금 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절차적 요건이 쟁점으로 제기.

○ 자문의견

근로계약에서 약정된 임금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 없이 효력이 발생하나,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명확한 개별 동의가 필요함.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기존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방적 감액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음.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감액된 임금이 적용되려면 근로자 본인의 서면 합의서나 변경된 근로계약을 통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구두 합의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문서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함.

전시공간 운영업을 준비 중이며, 공간 내에서 간단한 식음료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며 사업자등록 이전에 구청의 간이음식점 허가 절차와 함께, 전시공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관료, 작품판매, 입장료 등 수입유형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전반적인 세무 자문과 전시작품 중 작가 소유의 작품을 위탁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원천징수 절차에 대한 문의

○ 내용(요약)

전시공간 운영업 사업자등록 및 수입유형별 세무처리 자문

○ 해당분야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원천징수

○ 사례경과

전시공간 운영업은 공간 대여뿐 아니라 식음료 판매, 전시입장료, 작품판매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구조를 가질 수 있는 복합업종으로 분류.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수입 항목별 과세 여부, 예술작품의 면세 범위, 대관료 및 공동전시 수익 분배 시 원천징수 문제 등 다층적인 세무 검토 필요.

○ 자문의견

전시공간 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 대상에 해당.

단발성 전시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수익 활동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자등록 필요.

작품 판매의 경우, 예술창작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갤러리 대관 수입은 영리목적 대관은 과세, 비영리목적은 면세로 구분되며,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공동 전시 등으로 발생한 수익 분배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며, 전시 준비비용·임차료·홍보비 등은 적격증빙이 있는 경우 경비로 인정.

문화재단, 디자인진흥원 등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이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

신고기한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인쇄업을 장기간 운영 중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세청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아 관련 세무사항 전반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에 세금 변동이 발생하는 원인, 재무제표 작성 및 관리에 대한 문의

○ 내용(요약)

인쇄업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절세 관련 세무 자문

○ 해당분야

저작권 / 계약법 / 콘텐츠 납품계약

○ 사례경과

A업체는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액공제 적용 누락이 확인되어 절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1.3%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해당 서식과 적용 방법을 안내함.

또한 매입 관련 일부 비용을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있었으며, 공제 인정을 위해 대표자 명의 카드 사용이 필요함을 안내함.

○ 자문의견

A업체는 매출액 감소로 인해 2025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로 변경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의무는 없으며, 간편장부를 통한 소득·지출 관리가 가능함을 안내함.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외에도 카드 매출 내역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신고 오류를 방지할 것을 권고함.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정부지원사업 등 공공지원제도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정부지원사업 참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주택임대사업자 양도 및 폐업, ②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

○ 내용(요약)

주택임대사업자 제외대상 관련 정부지원사업 참여 요건 및 법인전환 절차 자문

○ 해당분야

세무 / 사업자전환 /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률

○ 사례경과

A업체는 주택임대사업자 신분으로 디자인 관련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불가한 상태에서, 폐업 또는 법인전환을 통한 지원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함.

이에 따라 세금 환수 가능성, 법인 설립 및 유지비용 비교, 절차상 유불리에 대해 설명함.

○ 자문의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67조에 따라, 포괄양수도 신고를 통한 과태료 면제 절차가 가능함을 안내했으며 필요한 신고방법, 절차, 제출서류를 설명함.

또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절차, 의무, 세무상 효과 및 유지비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함.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세액감면 승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세제 혜택을 일부 승계할 수 있음을 설명함.

최종적으로, 세금 환수액과 법인 유지비용을 비교하여 경제적 효용이 큰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권고함.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kidp

기타 및 특수사례 관련



01

지역
서울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된 기존 제품을 전체 디자인으로 다시 출원해야 하는지 여부

○ 내용(요약)

부분 디자인 및 신규성 상실의 예외

○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사례경과

기존에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된 손잡이를 포함한 부채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음. 이를 전체 디자인으로 출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전체 디자인으로 출원할 경우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디자인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함.

○ 자문의견

부분 디자인과 관련하여, 이미 등록된 부분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을 포함하는 전체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에 해당되어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전체 디자인 출원은 필요하지 않음.

또한,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출원 전에 전기통신회선 등을 통해 공지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 이유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함.

과거에 제작한 디자인의 원본 파일과 사용권을 클라이언트가 요청했는데 적정 비용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 내용(요약)

디자인 원본 사용권에 대한 비용 책정

○ 해당분야

디자인 저작권

○ 사례경과

약 2년 전 대중공연 홍보물(포스터와 팸플릿)을 디자인함. 당시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수정하는 조건으로 사용권을 부여했고, 작년까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이 이루어짐. 올해 클라이언트 측에서 2년 전 제작한 동일한 포스터와 팸플릿의 원본 파일의 사용권 제공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적절한 비용을 책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함. 클라이언트는 영리 목적의 공연을 연간 10회 이상, 최소 3년 이상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저작권에 대한 별도 협의는 없었지만, 만약 저작권까지 양도하게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적절한 비용 산정 기준을 알고 싶음.

○ 자문의견

원본 파일 교부 및 사용권 부여와 관련된 비용 책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함. 다만 상대방이 원본 파일을 교부받을 경우, 이후 해당 디자인을 기반으로 직접 수정 활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신청인은 향후 용역 기회의 상실 등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원본 파일 내에 신청인이 보유한 유료 이미지 소스나 독자적 디자인 요소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권 및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계약서 또는 별도의 문서로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바람직함.

iF 디자인 어워드에 출품을 하고 수상자로 선정 되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포기 의사를 iF 사무국측에 전달하였으며, 하지만 사무국측에서는 반드시 수상을 해야 한다고 함

○ 내용(요약)

디자인 어워드 수상비

○ 해당분야

디자인어워드

○ 사례경과

A업체는 국제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에 출품을 했고, 이에 대한 수상자로 선정됨. 그러나, 신청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수상을 거절하고 포기 의사를 iF 사무국측에 전달함. iF 사무국측에서는 수상자로 선정 되면, 수상비를 납부하고 반드시 수상을 하여야 한다고 신청기업측에 내용을 전달했고, 신청기업은 이를 거부함. iF 사무국측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채권 추심 등을 진행한다고 신청기업에 전달한 상태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 자문의견

1. 대응 방안

계약 조건 확인 : 출품 신청 시 동의한 규정이나 약관을 확인하여 수상 거절 가능 여부와 수상비 납부의무의 존재 여부를 검토해야 함. 특히 수상자 선정 후 수상 거절이 불가능하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협상을 통한 해결 : iF 사무국과 협상을 통해 수상 거절의 이유를 설명하고 상호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함. 디자인 어워드는 수상자의 명예와 주최 측의 권위가 모두 중요하므로, 양측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

법적 대응 준비 : 만약 iF 사무국이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함.

1) 계약 성립의 하자 주장 : 출품 신청 시 수상 거절 불가 조항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음.

2) 채권 추심이 진행될 경우,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2. 결론 : A업체의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거절은 계약법상 유효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출품 신청 시 명시적으로 수상 거절 불가 조항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수상비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iF 사무국의 채권 추심 통보에 대해서는 출품 규정과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시도하되, 필요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국제적인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준거법과 관할권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함.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kidp

찾아보기





지식재산권 관련

01	사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구두고지, 형사고소 등을 하였지만 상대방이 등록무효이의신청 및 심판을 제기하게 된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	18
02	디자인 용역계약서 검토와 개발된 상표의 출원 가능성	19
03	자사가 개발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출원 및 등록 가능 여부	20
04	자사가 개발한 펜스 제품 디자인 등록 가능 여부	21
05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LED 제품 디자인등록의 가능 여부	22
06	반려동물 구강특화 수제간식으로 개발된 자사 브랜드의 상표출원 가능 여부	23
07	무선통신기기 브랜드 개발 디자인 상표출원 가능 여부	24
08	자사가 개발한 양봉원 브랜드 출원 가능 여부	25
09	의류 브랜드 출원가능성 여부	26
10	자사 낚시용 회전외자 디자인권 출원 가능 여부	27
11	자사 수납식 관람석용 락킹 고리 디자인 출원 가능 여부	28
12	하계휴가 용품 판매 브랜드 로고 상표출원 가능 여부	29
13	공모전 수상작 캐릭터의 저작권과 2차 가공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30
14	웹 플랫폼 특허출원 가능 여부	31
15	제품디자인 유사성 분쟁 예방 관련 자문 요청	32
16	지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개발 및 판매 가능 여부	33
17	제품 용기 리디자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가능성과 방법이 궁금함	34
18	홈페이지를 타사 사이트를 참고하여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가 해당되는지 궁금함	35
19	기업명과 제품명을 각각 상표로 출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함	36
20	행사용 부스와 테이블 · 의자가 디자인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함	37
21	디자인의 형태 · 비례 · 색채 · 질감은 어디까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38
22	해외에서 동일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 다른 상품류로 출원할 수 있는지 궁금함	39
23	웹툰 · 일러스트 작업에서 연예인 얼굴을 참고하면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인지 궁금함	40
24	캐릭터의 권리 귀속과 보호 방법이 궁금함	41
25	기획 중인 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할 때,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함	42
26	브랜드 서비스명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 문의	43
27	미술작업의 작품 컨셉(아이디어 및 표현 방식)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44
28	유사한 작품이 온라인에 게시된 경우, 제 작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45

29	저작권 등록된 캐릭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하는지	46
30	지자체 상징 캐릭터를 활용한 공동개발 굿즈의 디자인권 보호 방안	48
31	타인의 캐릭터 IP를 활용한 제품에서 저작권 범위와 재판매 제지	50
32	라이선스를 통해 활용한 캐릭터 디자인의 디자인권 출원 가능 여부	51
33	애니메이션 속 이미지를 모형으로 재현한 도서 출간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52
34	3D 설계 도면을 유료로 판매할 때 저작권 보호와 불법 공유 대응	53
35	신규 브랜드 개발 시 폰트 · 저작권 ·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54
36	공공행사 디자인을 의뢰받아 제작했으나, 주최 측이 동의 없이 기획사를 변경한 뒤 기존 디자인을 행사에 사용한 경우 대처방안	55
37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디자인이 최종 불합격 후 무단으로 사용되어 동일 제품이 출시되고 해외에서 판매된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여부	56
38	부친이 창작한 상표와 로고를 장남이 무단으로 사용 · 재등록하여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중인데 이에 대한 상표등록무효 가능 여부	57
39	해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자체 제작한 제품 6종을 출시할 예정인데, 유사 제품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 제품별 디자인 등록이 별도로 필요한지	58
40	배리어프리 모바일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사업 특성상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2차 저작물 활용에 대한 저작권법 저촉 여부가 궁금함	59
41	친환경 전시 구조물을 제작/렌탈하는 브랜드를 운영 중인데, 당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 타 업체에서 제작/유통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함	60
42	제품명에 지역명과 꽃 이름이 들어가지만, 관련 원재료는 사용되지 않는 제품을 기획함. 이러한 이유로 'OOOOO'이라는 제품명에 법적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을지	61
43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국밥 체험 매장'을 오픈하려 하며 구상한 체험의 시스템을 특허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62
44	관광 상품 세트 제품 출시를 위해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SNS에서 발견한 포장재의 지기구조에서 착안하여 디자인을 구상함. 구조는 유사하나, 인쇄와 구성 요소 등은 당사에서 자체 개발하여 제작했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여지가 있는지	63
45	자체 개발한 사이트의 모티브가 있으며 또한 유사 프로그램도 존재하는데, 향후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64
46	자사 제품 중 일부는 한국 및 미국에서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나, 한 제품은 PCT 해외 출원 기한을 놓쳐 해외 진입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 다른 신제품은 출원 단계에 있어 해외에서 강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특허 맵 전략이 필요함	65
47	제품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외주업체임 . 클라이언트가 제품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요청을 하여 출원 절차와 방법을 찾고 있음. 전반적인 절차가 궁금함	66
48	개발한 제품을 직접 출원 하였으나, '디자인 출원 거절 사유 의견 결정서'를 받음. 어떻게 보완해야 좋을지	67



지식재산권 관련

- | | | |
|----|---|----|
| 49 | 전통식품 선물세트 패키지가 타사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음.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 68 |
| 50 | 신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출원 가능성과 제품 특허 등록 가능 여부 | 69 |
| 51 | 브랜드, 앱 디자인, 캐릭터 등 신규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 70 |
| 52 | 기존 웹툰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새로운 2차 창작물을 제작·활용함에 따라, 해당 2차 창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 시 저작권 침해 여부 및 법적 보호 가능성과 SNS나 팬사이트 등에서의 비상업적 게시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71 |
| 53 | 저작물의 사용권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상 분쟁을 예방하고자, 방송사와의 사이에 저작권 사용 및 권리행사 관련 계약을 작성하려 함. 이에 따라,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 | 72 |
| 54 | 공공디자인 공모 탈락 제안서의 디자인 도용 의혹 및 행정기관의 저작권 인식 문제 | 73 |



계약 및 디자인 용역비 관련

01	해외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정산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판단	76
02	직접 대면을 통한 인감도장 날인이 아닌 비대면 스캔받은 파일 인감도장 사용시 법적 문제 여부	77
03	해외 세관 통관 시 반출 불가 조치가 되었는데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고 싶고 관련하여 내용증명서 작성이 가능한지	78
04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 상세페이지 제작 계약 해제 및 금액 반환 요구	79
05	계약 체결 전 업무를 진행한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의 지연 ·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80
06	공모전 입상 후, 발주처에서 시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추가 업무와 저작권 관련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의 대응	81
07	전사용 그래픽 및 리플릿 디자인 용역 대부분을 완료하였으나 고객사의 자료 지연으로 일부 작업이 아직 미완료 상태이며 계약 기한 내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와 잔금 정산 권리,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 중인데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	82
08	클라이언트의 반복적인 일정 지연, 계약 범위를 초과한 요구, 신뢰 훼손 등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	83
09	당사가 개발한 제품을 중국 OEM 공장을 통해 제작하려 하며 금형제작 및 디자인 적용 제품의 소유권, 제조 · 수입 계약서 상 권리 관계, OEM 책임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85
10	보증보험을 받지 않고 용역비용을 지불하였더니, 공사가 약속한 만큼 진행 되지 않아 지급한 용역비를 보전할 방법이 궁금함	86
11	실내 리모델링 설계용역 입찰 시 '건축사사무소 업종 등록'만을 요건으로 한 제한의 타당성 검토였으며, 이로 인해 영업기회 및 매출 손실이 발생함	87
12	일러스트 용역 납품 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관련 자문	89
13	브랜딩 작업을 진행하기로 구두로 합의 후 작업을 완료했으나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현재는 전화 · 카카오톡 · 문자 모두 연락 두절 상태로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며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지 등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서 작성 및 민사청구가 가능한지	90
14	용역 90% 수행 후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91
15	용역 완료 후 상당 기일이 지났음에도 내부사정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 방법	92
16	잔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상대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잔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을 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	93
17	인테리어 도면 작업 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함	94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찾아보기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01	신규 브랜드 로고 디자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98
02	이미지 라이선스를 구매해 고객사에 제공했지만, 라이선스 업체가 고객사를 대기업으로 분류하며 라이선스 업그레이드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처 방안	99
03	공방 간판에 사용된 폰트로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저작권 안내문'이 왔을 경우 대응 방안	100
04	클라이언트가 웹에 공개한 파일로 '정품폰트 프로그램 및 PDF 게시 사용권 증서 보유 확인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을 받음. 인쇄 라이선스는 보유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부분은 서비스로 제공한 전자파일 송부 건임. 어떻게 대응할지?	101
05	저작권 등 침해 관련 소송 대응	102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찾아보기

노무 및 회계 관련

01	직원 업무 과실 및 퇴사 관련 손해배상, 교육 과정 운영의 법적 책임	106
02	사내 인사제도 정비 시 근로계약서와 노사협의회 설치는 어떻게 검토해야 할지	107
03	지원받은 사업비 정산 시 증빙서류와 부가가치세 처리	108
04	부모님 명의의 주식을 이전하려고 할 때 세금과 법적 절차	109
05	원격근무(국내/외)를 포함한 근무 시, 근로조건을 법적 리스크 없이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10
06	직원이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병가를 사용함. 징계하고 사유가 되는지 문의	111
07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직원 휴식·휴일 운영, 근태 불량자 관리 등 사업주 유의사항	112
08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체계를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을 감액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요청.	114
09	전시공간 운영업을 준비 중이며, 공간 내에서 간단한 식음료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며 사업자등록 이전에 구청의 간이음식점 허가 절차와 함께, 전시공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관료, 작품판매, 입장료 등 수입유형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전반적인 세무 자문과 전시작품 중 작가 소유의 작품을 위탁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원천징수 절차에 대한 문의	115
10	인쇄업을 장기간 운영 중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세청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아 관련 세무사항 전반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에 세금 변동이 발생하는 원인, 재무제표 작성 및 관리에 대한 문의	116
11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정부지원사업 등 공공지원제도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정부지원사업 참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주택임대사업자 양도 및 폐업, ②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	117



- | | | |
|----|---|-----|
| 01 |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된 기존 제품을 전체 디자인으로 다시 출원해야 하는지 여부 | 120 |
| 02 | 과거에 제작한 디자인의 원본 파일과 사용권을 클라이언트가 요청했는데 적정 비용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 121 |
| 03 | iF 디자인 어워드에 출품을 하고 수상자로 선정 되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포기 의사를 iF 사무국측에 전달하였으며, 하지만 사무국측에서는 반드시 수상을 해야 한다고 함 | 122 |

2025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2025 KIDP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소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TEL 031-780-2232(소관부서: 산업육성실)

웹사이트



www.kidp.or.kr



drights.kidp.or.kr (디자인권리보호)

2025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승인이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관련 의견은 상기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IDP All rights reserved